

공연 안전제도 설명회 자료

안 내

본 안내서는 공연법에서의 안전제도와 관련된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며,
관내 공연장을 행정·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연법상
안전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 1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목 차

제1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 안전제도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01
제2장 재해예방조치	09
제3장 중대 사고 보고	17
제4장 공연장 방화막 설치의무	20
제5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25
제6장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32
제7장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34
[부록 1. 안전사고 예방 사례교육]	41
[부록 2. 공연 관객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46
[부록 3. 공연자 안전교육 안내]	59
[부록 4. 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제6조의2 관련)]	65
[별첨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절별 유의 사항]	
[별첨 2.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절차]	
[별첨 3.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개정 주요 내용]	

제1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 안전제도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1. 공연 안전제도 구성 체계

1) 공연법 적용 대상

▪ 공연의 정의

(공연법 제2조제1호)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 공연장과 공연장 외 공연

등록된 시설 → 공연법의 공연장에 대한 규정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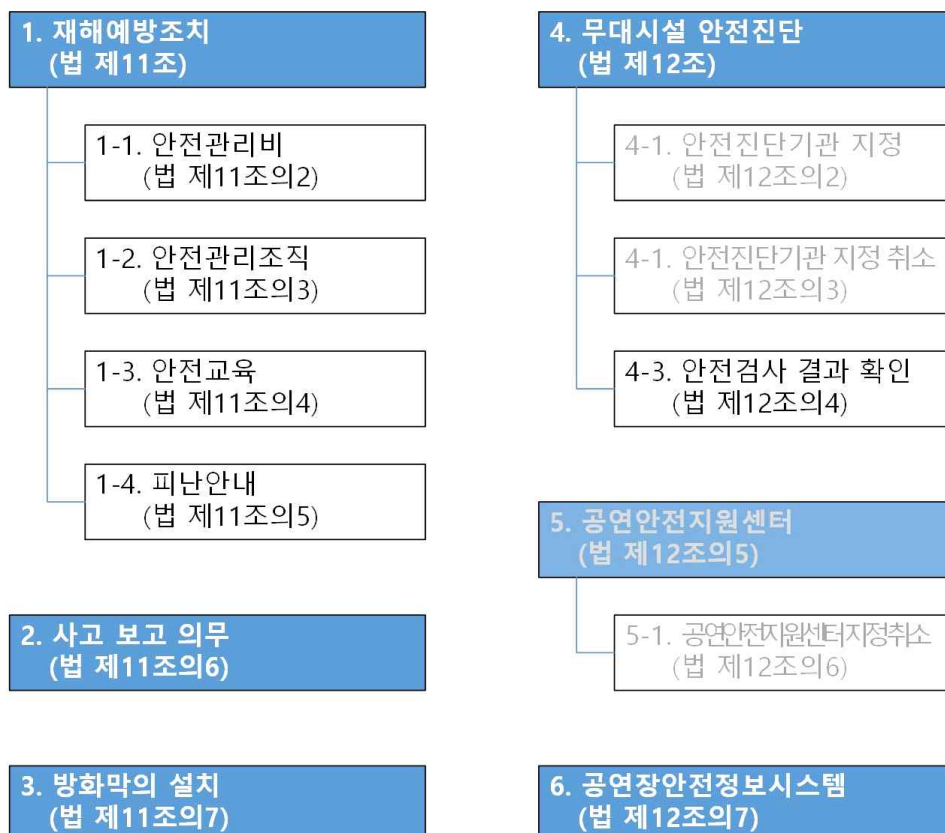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공연 →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규정 준수

▪ 공연장의 정의

(공연법 제2조제4호)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 「공연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연법 안전제도 구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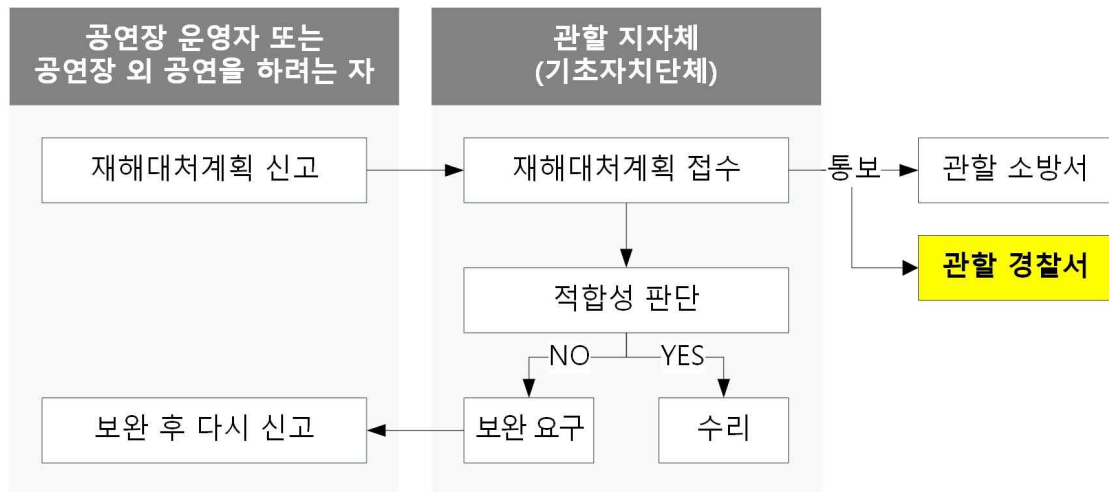
2. 공연 안전제도 주요 내용

1) 재해예방조치

▪ 재해대처계획 신고 시기 및 주체

	공연장	공연장 외 공연(예상 관람객 1천명 이상)
신고 시기	공연장 등록 시 제출 연말(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 제출	공연 14일 전 제출
변경 신고	변경 계획 적용 전	공연 7일 전까지
신고 주체	공연장 운영자	공연을 하려는 자

▪ 재해대처계획 신고 절차



▪ 재해대처계획 신고 내용

구 분	공연장 (객석 수)		공연장 외 공연 (예상 관람객 1천명 이상)
	500석 미만	500석 이상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	○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	○
안전관리비 계상 (공연법 제11조의2)	×	○	○
안전관리조직 구성 (공연법 제11조의3)	×	○	○
안전교육 관련 사항 (공연법 제11조의4)*	△*	○	○
피난안내 (공연법 제11조의5)	○	○	○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	×	○
공연계획서	×	×	○

* 3개의 안전교육(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자) 중 “공연자 안전교육”만 해당

▪ 안전관리비 계상

	공연장(객석 5백석 이상)	공연장 외 공연(예상 관람객 1천명 이상)
계상 비율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	• 1천명 ~ 3천명 : 공연제작비용의 1.15% 이상 • 3천명 이상 : 공연제작비용의 1.21% 이상
결과 보고	매년 2월 말까지 사용내역서 제출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서 제출

▪ 안전관리조직

	공연장(객석 5백석 이상)	공연장 외 공연(예상 관람객 1천명 이상)
배치 기준	• 500 ~ 1천석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1천석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1천명~3천명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3천명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안전교육

	공연장 (객석 5백석 미만)	공연장 (객석 5백석 이상)	공연장 외 공연 (예상 관람객 1천명 이상)
안전총괄책임자	-	2년마다 4시간	
안전관리담당자	-	2년마다 8시간	
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 공연자의 정의(공연법 제2조제3호) :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 직접 하는 자 : 배우, 가수, 무용수, 연주자 등
- 주재 하는 자 : 연출, 감독, 스태프, 작업자 등

▪ 피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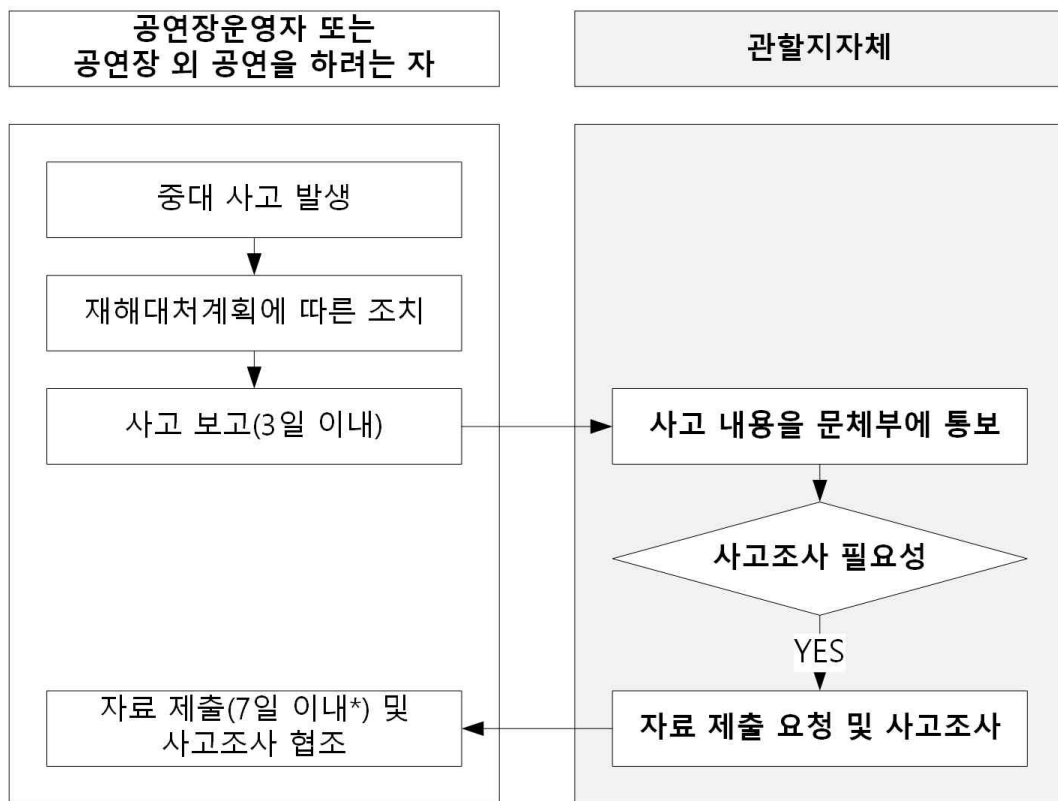
		공연장	공연장 외 공연 (예상 관람객 1천명 이상)
피난 안내도	위치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내용	•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완강기·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방시설(소화기·소화전·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심장박동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 비상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피난 안내	방법 및 시기	• 방법: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안내 • 시기: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안내	
	내용	•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 등의 위치 •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 장애인·노인·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2) 중대 사고 보고

▪ 중대 사고의 범위

-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추락·전도(顛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 보고 절차



*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제출 연기 가능

▪ 보고 사항

-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 발생 경위
- 사상자 등 피해 상황
-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
- 향후 조치계획

3) 방화막 설치

▪ 방화막 설치 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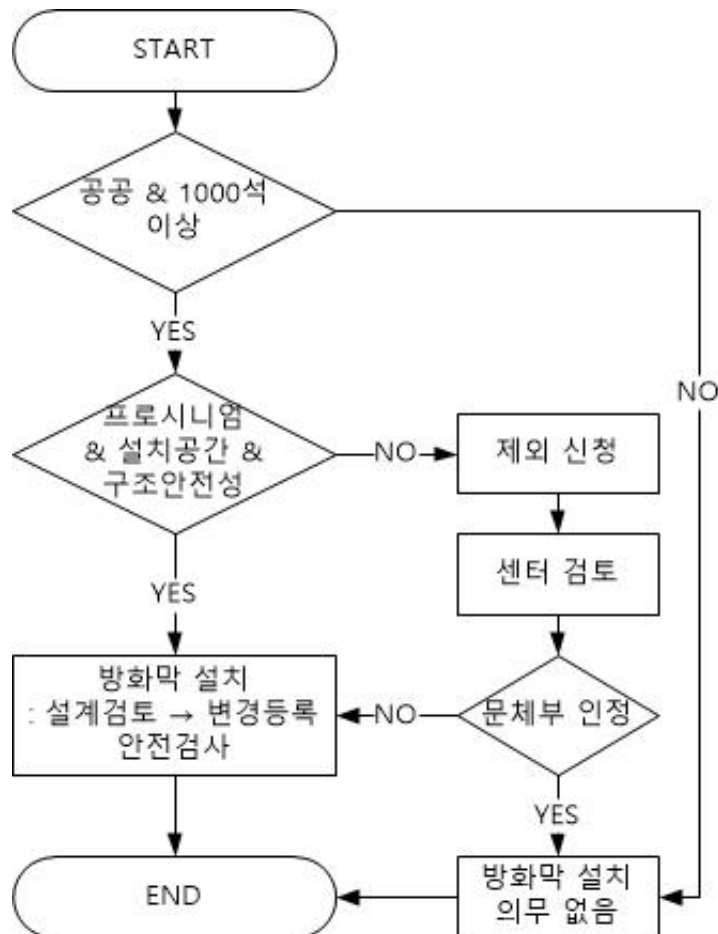
-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프로시니엄)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 방화막 의무설치 및 소급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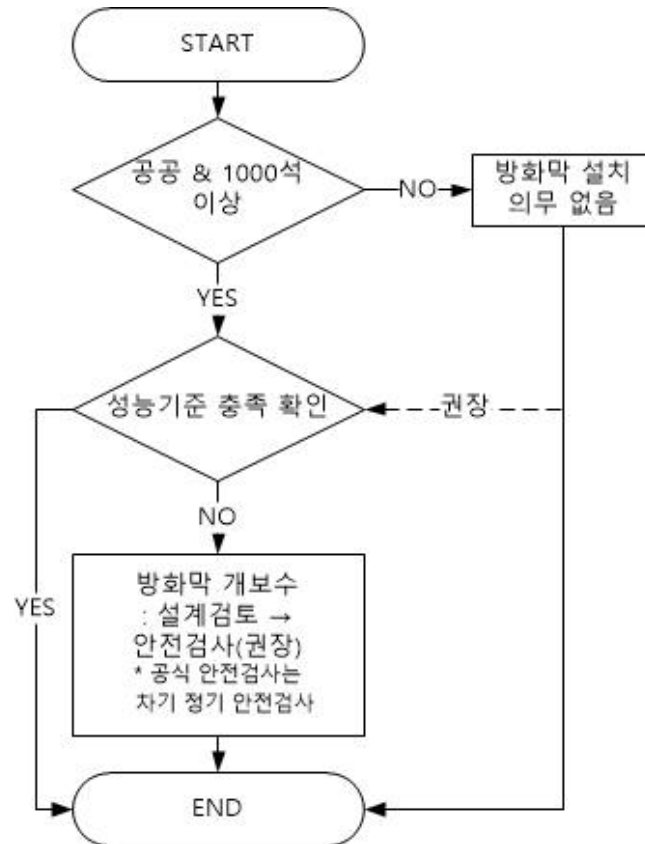
- (의무설치 적용) 법 시행 이후(2023.5.3부터)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 (소급적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2026.5.3까지)에 방화막을 설치

▪ 방화막 의무설치 및 기능/성능 확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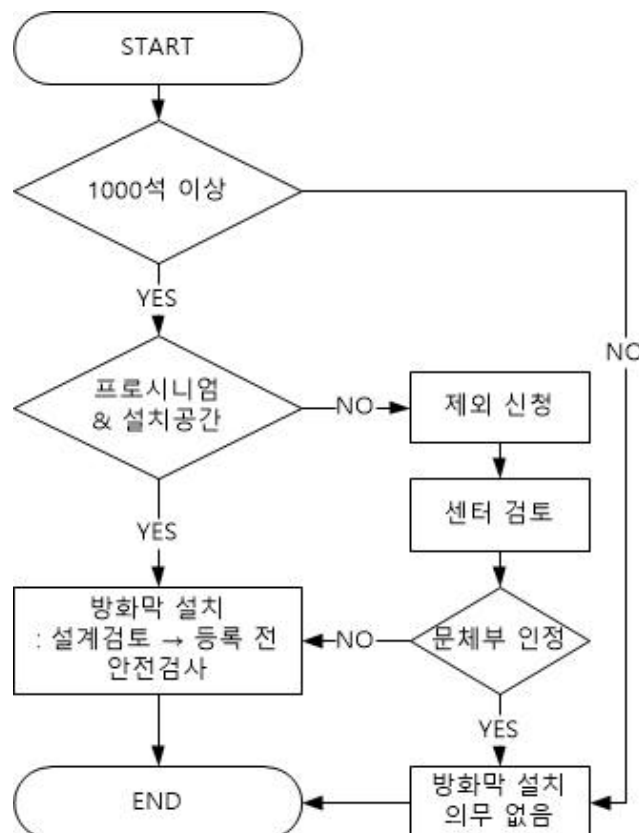
- 소급 대상 기존 공연장(공공 공연장) : 방화막이 없는 경우



- 소급 대상 기존 공연장(공공 공연장) : 방화막이 있는 경우



- 신설 공연장(공공/민간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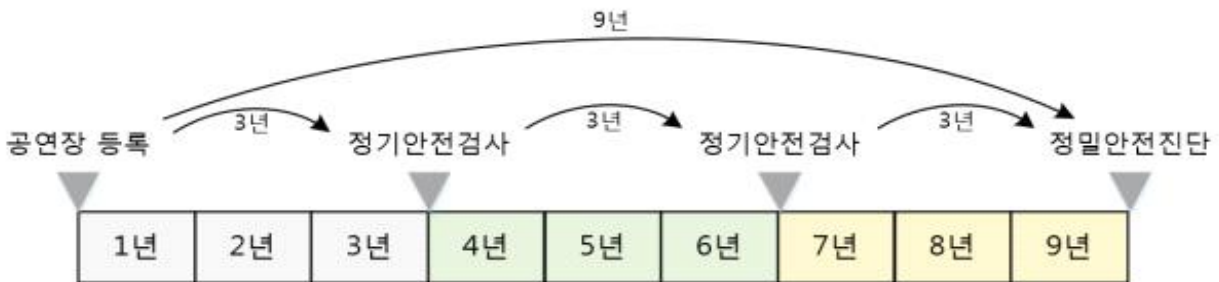


4) 무대시설 안전진단

▪ 안전진단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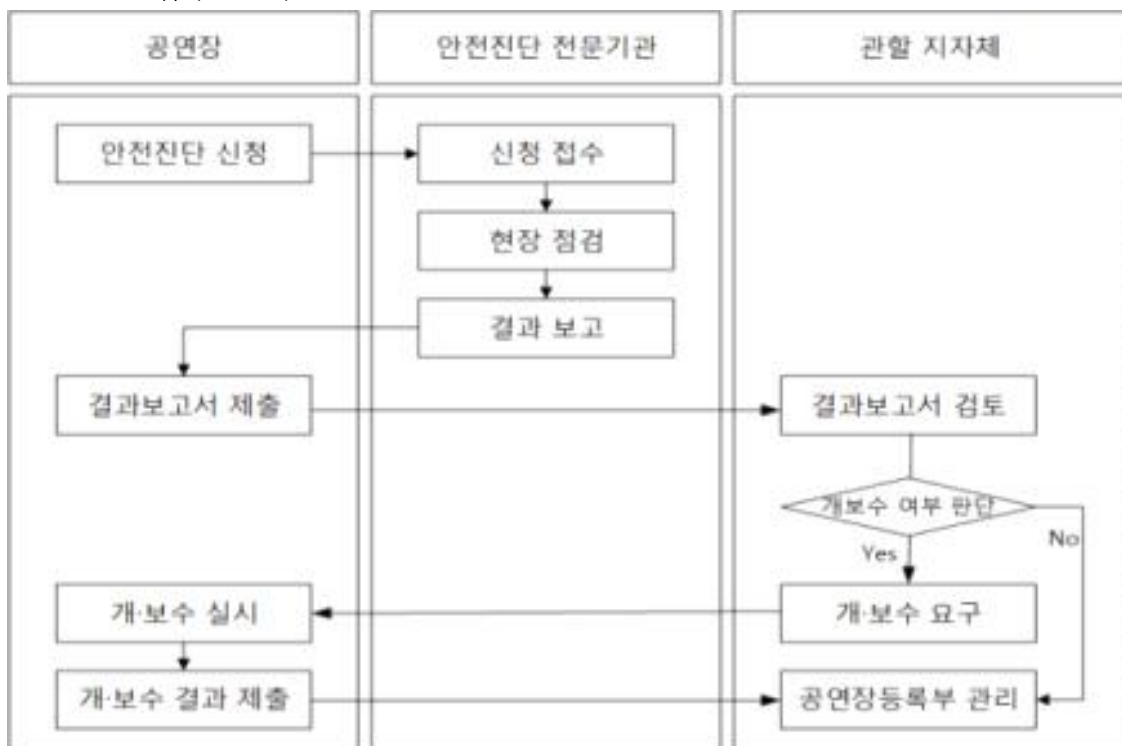
- 설계검토 → 등록 전 안전검사 → 정기 안전검사 → 정밀안전진단
- ※ 모든 공연장 대상(단, 설계검토는 구동 무대기계·기구수 40개 이상만 의무)
- ※ 자체 안전검사는 공연장 자체 수행(안전진단기관 대행 가능)

▪ 안전진단 주기



- ※ 자체 안전검사 : 매년(주간, 월간, 반기), 기록 3년간 보존 의무

▪ 안전진단 업무 절차



▪ 무대시설 변경 시 공연장 등록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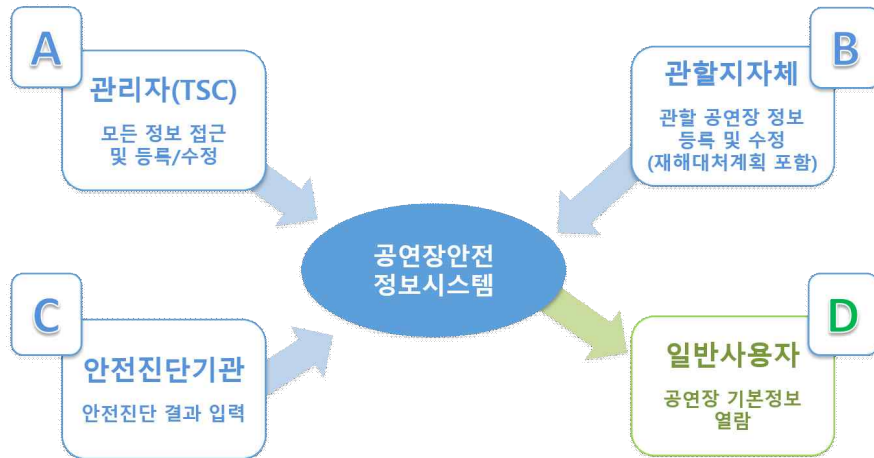
- 리모델링 등으로 무대시설(무대기계·기구)가 증가한 경우 규칙 제6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공연장 등록을 변경해야 함
- 규칙 제6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변경된 무대기계·기구에 대하여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실시
-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변경등록 신청(시설설치내역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안전진단 결과)

5)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www.kossis.or.kr)

▪ 수집 및 관리 정보와 공개 정보

수집 및 관리 정보	공개 정보
• 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현황 •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 사고보고의 내용 • 안전검사등의 결과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현황 •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 안전검사등의 결과를 평가한 정보	•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 •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검사·점검 등의 결과 • 공연장의 등록·변경등록·폐업에 관한 정보 •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 안전검사등의 결과를 평가한 정보

▪ 시스템 구성 및 주체별 권한



구분	주체	권한
A	관리자 (TSC)	- 모든 상세정보 접근 및 등록/수정과 시스템 운영 및 관리
B	관할지자체	- 관할 공연장 정보 등록(신규) 및 수정(변경/폐업) - 공연장 및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입력 - 관할 공연장 안전진단 수행 여부 및 결과 확인 - 공연장 안전교육 수료 정보 확인* * 2026년부터 법정 안전교육 수료 정보 제공 예정
C	안전진단기관	- 안전진단 결과 입력 및 결과보고서 업로드
D	일반 사용자	- 로그인 없이 기본정보 열람 가능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https://youtu.be/s276IOA3VuU>

☞ 추가 질의사항 stagesafety@ktl.re.kr



제2장 재해예방조치

1. 규정 및 내용 1 : 재해대처계획 신고

1) 관련 법조항

- 법 제11조, 영 제9조

2) 재해대처계획 신고 범위 및 시기

- 등록된 공연장 (신고 주체 : 공연장운영자)
 - ▶ 공연장 등록 시 : 해당연도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 ▶ 공연장 등록 이후 : 다음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신고
-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나 장소 (신고 주체 : 공연을 하려는 자와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공동 신고)
 -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축제, 행사 등에 공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의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수립 범위는 “공연이 진행되는 구역”에 한함
- “공연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의 공연 관람객이 예상되면 재해대처계획 신고 의무가 부여
-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공연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전체 공연기간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같은 공연이더라도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공연 각각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함.

- ▶ 재해대처계획은 공연 개시 **14일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3)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구 분	공연장(객석 수)		공연장 외 공연 (1천명 이상의 관람 예상)
	500석 미만	500석 이상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	○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	○
안전관리비 계상 (공연법 제11조의2)	×	○	○
안전관리조직 구성 (공연법 제11조의3)	×	○	○
안전교육 관련 사항 (공연법 제11조의4)*	△*	○	○
피난안내 (공연법 제11조의5)	○	○	○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	×	○
공연계획서	×	×	○

* 3개의 안전교육(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자) 중 “공연자 안전교육”만 해당

4) 재해대처계획의 보완 요구 ☞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 관할 지자체는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여 재해대처계획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비현실적이거나 안전에 관한 관리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 보완을 요청

5) 재해대처계획의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통지 ☞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 관할 지자체는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5. 3. 25. 공연법 개정으로 통보 대상에 경찰서 추가)

6)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신고와의 관계 ☞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재해대처계획	안전관리계획
근거법령	공연법 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관할부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대상	공연장 및 예상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장 외 공연	지역축제
절차	계획 신고 → 지자체 검토 → 수리	계획 수립 → 안전협의회 심의 → 승인

- ※ 지역축제에 포함된 공연은 공연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과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임)

2. 규정 및 내용 2 : 안전관리비

1) 관련 법조항

- 법 제11조의2, 영 제9조의2

2) 안전관리비 계상

- 공연장에서의 안전관리비 계상
 - ▶ 공연장 운영비의 1% 이상 : 객석 수 500석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
- 공연장 외 공연(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에서의 공연)에서의 안전관리비 계상
 - ▶ 예상관객 수 1,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 공연비용의 1.15% 이상
 - ▶ 예상관객 수 3,000명 이상 : 공연비용의 1.21% 이상

※ 안전관리비 계상 요령은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참조

-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도서자료” 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안전관리비 사용용도

-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보호장비의 구입
- 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 안전 관련 보험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 공연장에서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시기
 - ▶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공연장 외 공연에서의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제출 시기
 - ▶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3. 규정 및 내용 3 : 안전관리조직 구성

1) 관련 법조항

- 법 제11조의3, 영 제9조의3

2) 안전관리조직 구성

- 공연장에서의 안전관리조직 구성
 - ▶ 객석 수 500석 이상 ~ 1,000석 미만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 객석 수 1,000석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공연장 외 공연에서의 안전관리조직 구성
 - ▶ 예상관객 수 1,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 예상관객 수 3,000명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위해 공연장운영자등이 지정하는 자로서,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 또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함 (예시 : 위급상황 발생 시 공연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 안전관리담당자 :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위해 공연장운영자등이 지정하는 자로서, 공연장이나 공연의 기술적·운영적 안전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는 자를 의미함

3) 안전관리조직 구성원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 기록 의무

-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재해대처계획 신고 시 포함하는 것을 권장하며, 안전 관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 중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을 근거하는 자료로 활용가능 함
- 예를 들어, 안전총괄책임자로 겸직 한 자의 인건비 일부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경우, 안전총괄책임자의 전체 업무 중 안전 관련 업무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4. 규정 및 내용 4 : 안전교육

1) 관련 법조항

- 법 제11조의4, 영 제9조의4

2) 안전교육 실시 의무

①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총괄책임자는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 의무
→ 안전교육 주기 :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4시간
- 안전관리담당자는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 의무
→ 안전교육 주기 :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8시간

※ 참고 사항

- 재해대처계획 신고 이전에 안전총괄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되어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함
- 즉,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을 필요 없음

-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은 공연 안전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교육 내용으로 실시해야 인정됨

② 공연자 안전교육

-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교육내용을 공연자에게 공연 전 1시간 이상 교육해야 함
- 공연자의 정의 :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조제3호)

③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 안전교육의 내용(제9조의4제3항 관련)

대상자	교육내용
1. 공연자	가.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나.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다.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라.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마.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바.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총괄 책임자	가. 안전총괄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나.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다.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마.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담당자	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라. 무대, 조명, 음향 등 분야별 안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마.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바.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규정 및 내용 5 : 피난안내

1) 관련 법조항

- 법 제11조의5, 규칙 제6조의2

2) 피난안내

- 공연장운영자등은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험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대상
 - ▶ 공연장
 -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 피난안내도 위치, 포함 내용 등 : 규칙 제6조의3, 별표 1에 따름
- 피난안내 방법 및 시기
 - ▶ 방법 :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안내
 - ▶ 시기 :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안내해야함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세부기준

-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1 참고 (부록 4)

6.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1) 행정처분 (법 제33조제5호·제5의2호, 규칙 제7조 및 별표2)

관할 지자체는 공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재해대처계획 수립·신고 등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공연장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공연자에 대한 공연활동정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사. 법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대처계획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5호	3일	7일	15일			
아.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5호				1 개월	3 개월	6 개월
자.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5호의2	3일	7일	15일	1 개월	3 개월	6 개월

2) 폐쇄조치 (법 제34조)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시물의 제거·삭제
 2.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3) 과태료 (영 별표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관할 지자체는 공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재해대처계획 수립·신고 등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라.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안전관리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2	계상하지 않은 금액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바.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2	용도 외 사용 금액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 안전관리조직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2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 안전교육

위 반 행 위	근거 법 조 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법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3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 피난안내

위 반 행 위	근거 법 조 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4항제1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7. 중점 관리 사항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그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피난안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공연장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피난안내도 설치와 피난안내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관할 지자체(시·군·구)는 본 안내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연장 등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기하여야 한다.

※ 위반사례

- 재해대처계획 미신고 및 지연 신고
- 안전관리 계상 부적정(최소 기준 미만)
- 안전관리조직 구성 부적정
- 안전교육 미실시

제3장 중대 사고 보고

1. 규정 및 내용

1) 관련 법조항

- 법 제11조의6, 영 제9조의6, 규칙 제6조의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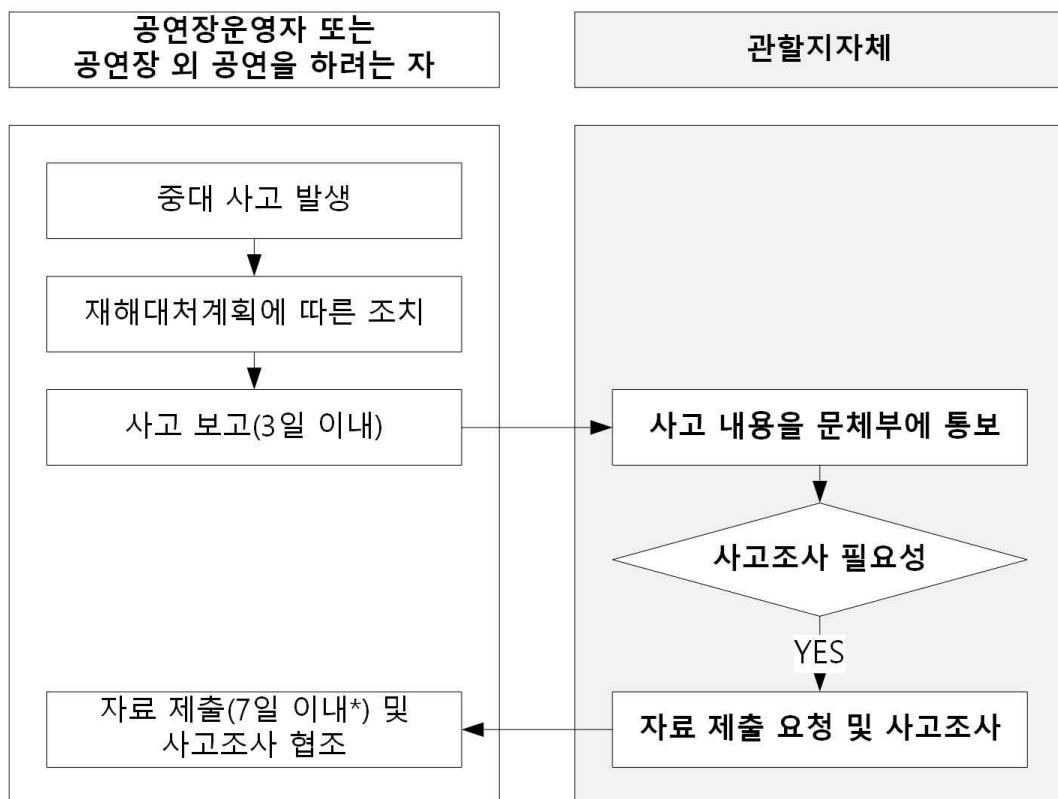
2) 중대 사고의 범위

-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추락·전도(顛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3) 보고 의무자

-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
 - 모든 등록 공연장운영자 및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4) 보고 절차



*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제출 연기 가능

5) 보고 사항

-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 발생 경위
- 사상자 등 피해 상황
-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
- 향후 조치계획

사고보고 사례

사고 일시	
사고 장소	
사고 발생 경위	무대 구조물 철거 작업 진행 중 추락 사고 발생. 안전장비(안전모, 하네스) 착용하였으나 이동 중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피해 상황	1명의 사망자 발생. <피해자 인적사항> - 이름: - 국적: - 나이:
사고 후 조치 내용	119 신고 후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 약 10분 후(16시 경) 구급차 2대 도착. 심폐 소생술 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 사고 후 즉시 무대 철거 작업 중지하였음.
향후 조치계획	향후 철거 작업 재개 시 안전 방안 대책 마련 중.

6) 보고 방법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

2.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1) 과태료 (법 제43조제3항제4호~제6호, 영 제24조, 별표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관할 지자체는 공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4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카. 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 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5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타. 법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6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법 제11조의6제3항의 금지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4장 공연장 방화막 설치의무

1. 규정 및 내용

1) 관련 법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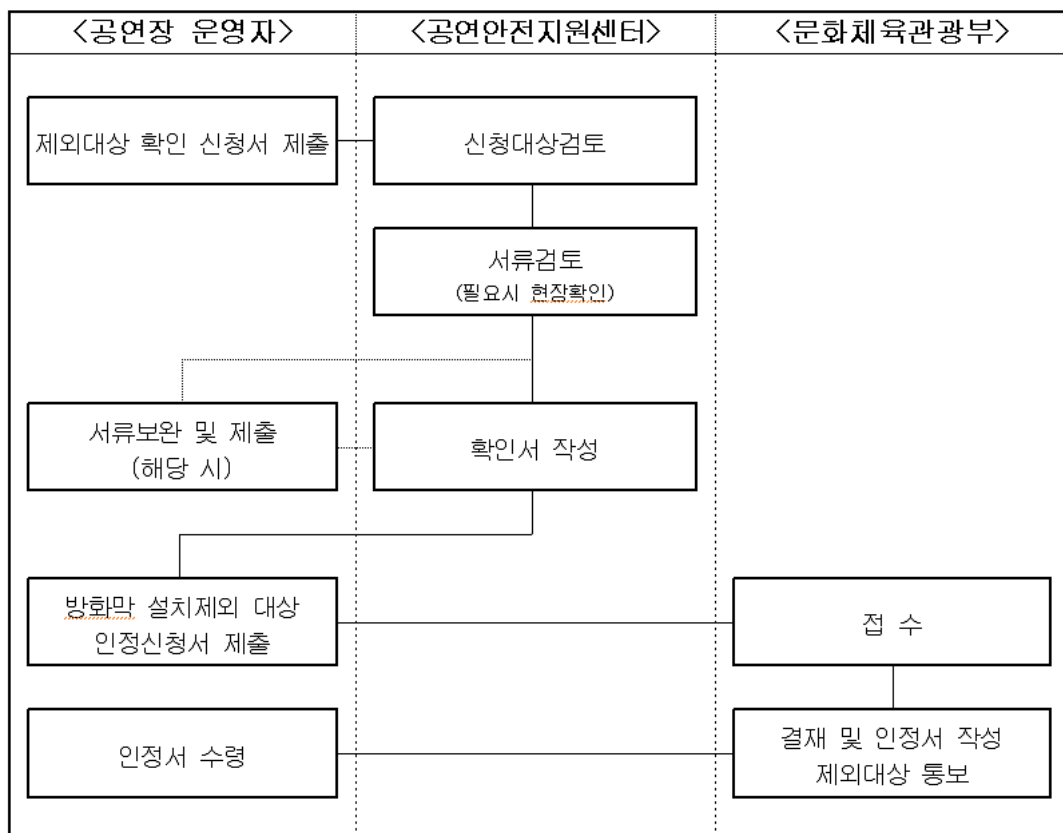
- 법 제11조의7, 영 제9조의7, 규칙 제6조의6(시행 2023. 5. 3.)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시행 2023. 11. 8.)

2)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시행령 제9조의7)

-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프로시니엄)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3) 방화막 의무설치 제외 절차

- 공연장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서를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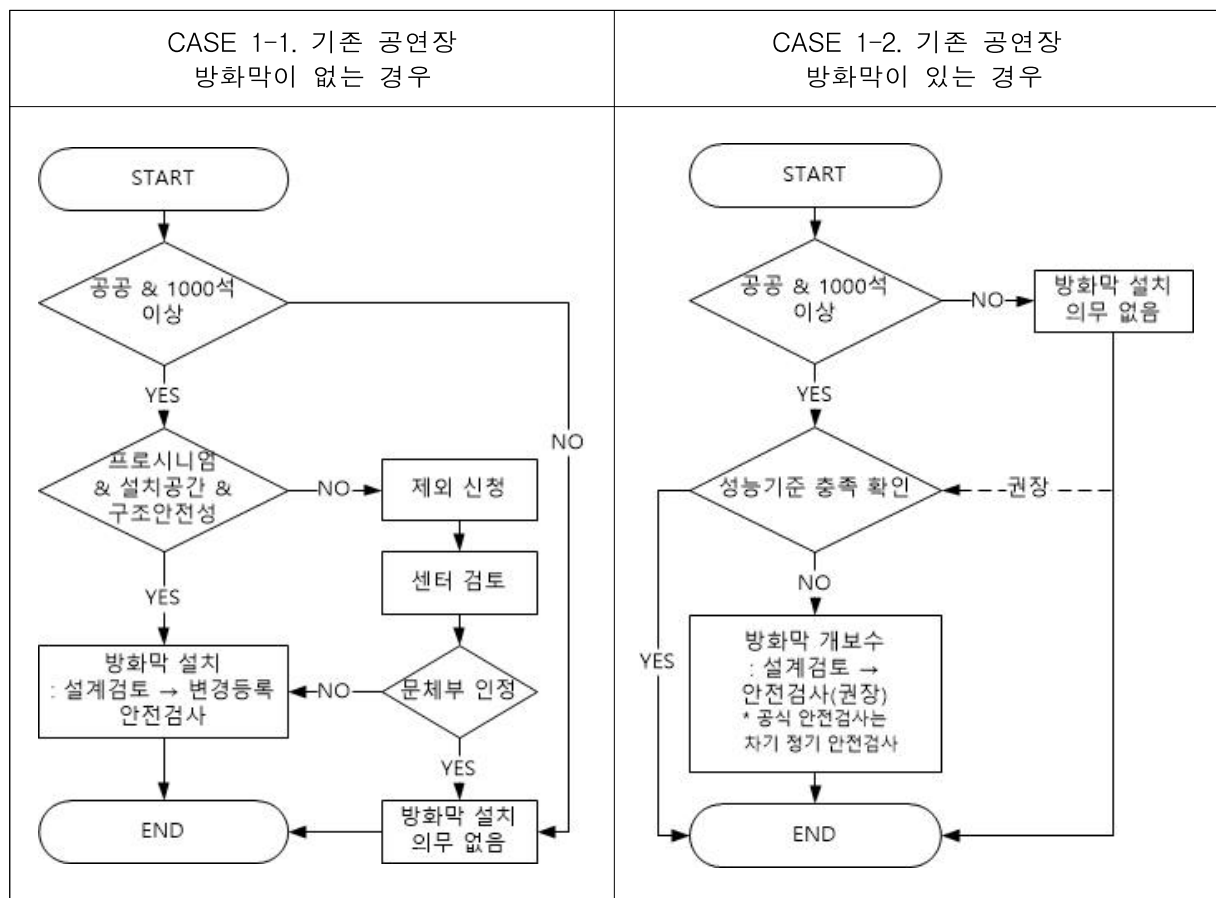
4) 방화막 의무설치 및 소급 대상

- (의무설치 적용) 법 시행 이후(2023.5.3.부터)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 (소급적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2026.5.3.까지)에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 * 부칙 <법률 제18855호, 2022. 5. 3.>

5) 방화막 의무설치 및 기능/성능 확인 절차

· 소급 대상 기존 공연장(공공 공연장)

- 1천석 미만의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으며, 그 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문체부로부터 인정신청서를 발급받아 방화막 설치의무 제외
-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중 방화막이 없는 공연장은 무대의 형태, 구조를 확인하여 방화막 설치 대상인지 제외대상인지 확인 필요
-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인 경우에는 설계검토를 거쳐 방화막을 설치하고, 소급 기간 내에 안전검사를 받아 변경등록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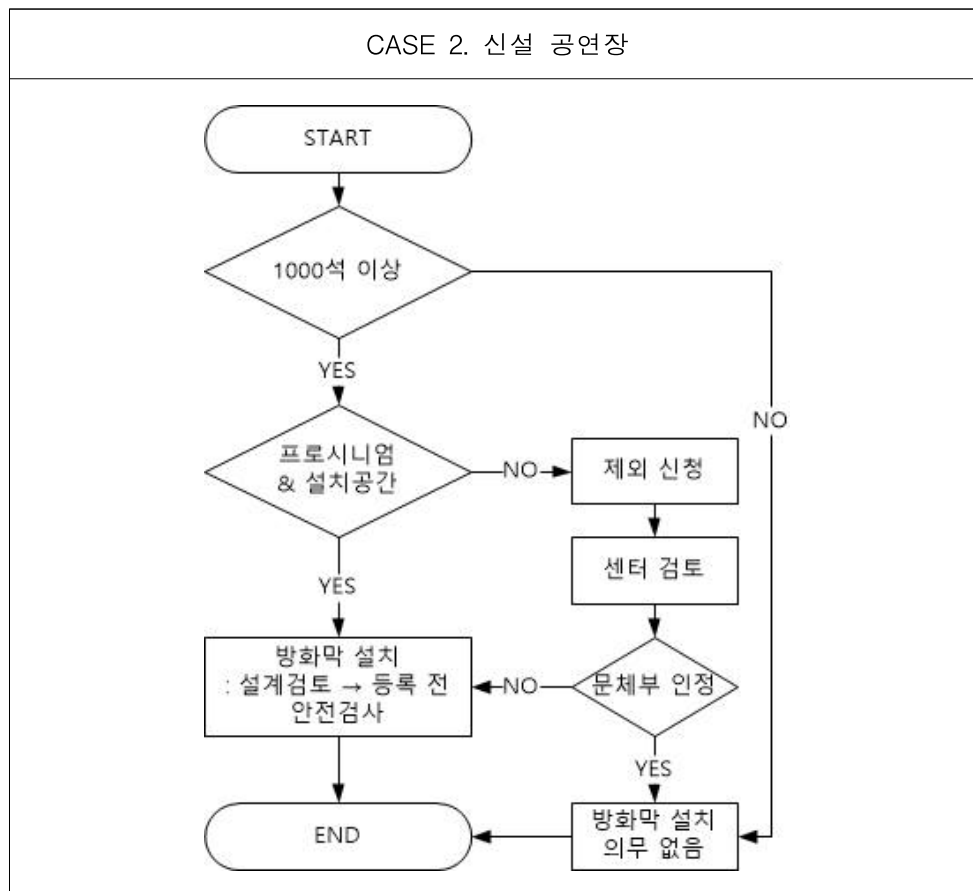


-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중 방화막이 설치되어 있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화막의 기능 및 성능은 문체부 고시(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의 설계검토, 정기 안전검사 기준에 만족하도록 조치 필요

* 기 설치된 방화막에 대한 성능은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확인하며, 공연법 제12조의2에 따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성능확인을 의뢰할 수 있음

■ 신설 공연장(공공/민간 공연장)

- 2023년 5월 4일부터 신설되는 공연장(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은 공연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함



6) 방화막 기능 및 성능 확인 사항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6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설계검토/정기 안전검사)
1.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방화막 패널 및 가이드 구성물은 비차열 30분 이상 내화 성능 충족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방화막의 패널, 가이드, 상·하단은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프로시니엄을 차단 후에는 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방화막의 비상 작동은 외부전원이 차단되어도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방화막의 비상 작동은 행정 거리 10 m 기준 30초 이하에서 무대와 객석 차단이 완료되도록 설계한다.
	방화막의 비상 작동은 안전을 고려하여 감속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작동이 낙하방식일 경우에는 무대 면으로부터 3 m 높이 지점에서 감속되도록 설계하며, 작동되는 시점부터 감속 제어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방화막 설치로 발생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상부 드리드 등 관련 구조부분의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방화막의 비상 작동은 어느 위치에서나 작동되도록 설계한다.
	방화막의 비상 작동은 반복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방화막의 비상 작동을 위한 동력 및 신호선은 30분 이상 내화 성능 충족한다.
	방화막의 비상 작동장치는 열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며, 보호덮개 등 의도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적용한다.
	방화막의 비상 작동을 알리는 시각 및 청각 알람 장치 설치한다.
	방화막은 조종실과 주무대 밖 안전한 장소(무대감독석 등)에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2개소 이상)

2.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 과태료 (법 제43조제1항제3호, 영 제24조, 별표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관할 지자체는 공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파. 법 제11조의7에 따라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제5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1. 규정 및 내용 1 : 무대시설 안전진단 종류 및 주기

1) 관련 법조항

- 법 제12조, 영 제10조,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2)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종류 및 구분

- 무대시설 안전진단 종류별 구분

구분	대상	시기	내용
설계검토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40개 이상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계 단계에서의 이론적 안전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
등록 전 안전검사	모든 공연장	공연장 등록 전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등록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기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
정기 안전검사	모든 공연장	공연장 등록 후 3년째 되는 해, 이후 3년마다 실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모든 공연장	공연장 등록 후 9년째 되는 해, 이후 9년마다 실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 9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정밀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	모든 공연장	매년*	공연장운영자가 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

* 자체 안전검사 기록 3년간 보존 의무 (공연법 제10조제4항)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 공연장 자체 안전검사표 : 주간, 월간, 반기

*** 안전진단기관 대행 가능

- 무대시설 규모(구동 무대기계·기구 수)에 따른 구분

구동 무대 기계·기구 수	안전진단 구분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 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
0 ~ 40개 미만	×	○	○	○	○
40개 이상	○	○	○	○	○

3)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안전진단 구분	안전진단 주기
설계검토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등록 전 안전검사	공연장 등록 전
정기 안전검사※	①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②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③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①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 ②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 ③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안전검사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 실시

▪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적용 방법

실시일	무대시설 안전진단 구분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최초 실시일	무대시설 설치 완료 후, 공연장 등록 신청 이전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	등록일로부터 9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
차기 실시일 (정기적 실시)	-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
그 외	-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무대시설 안전진단제도의 취지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사이의 기간은 3년(+31일)을 초과되지 않아야 함

※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공연법 제12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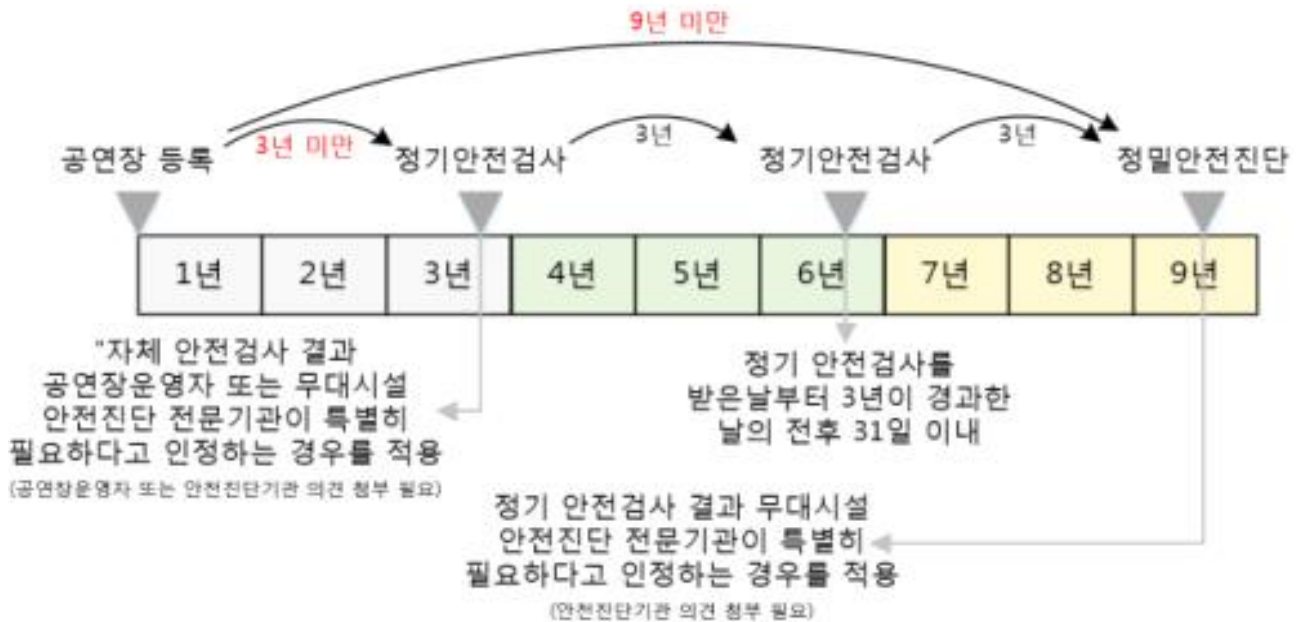
▪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규정 준수의 경우)



※ 공연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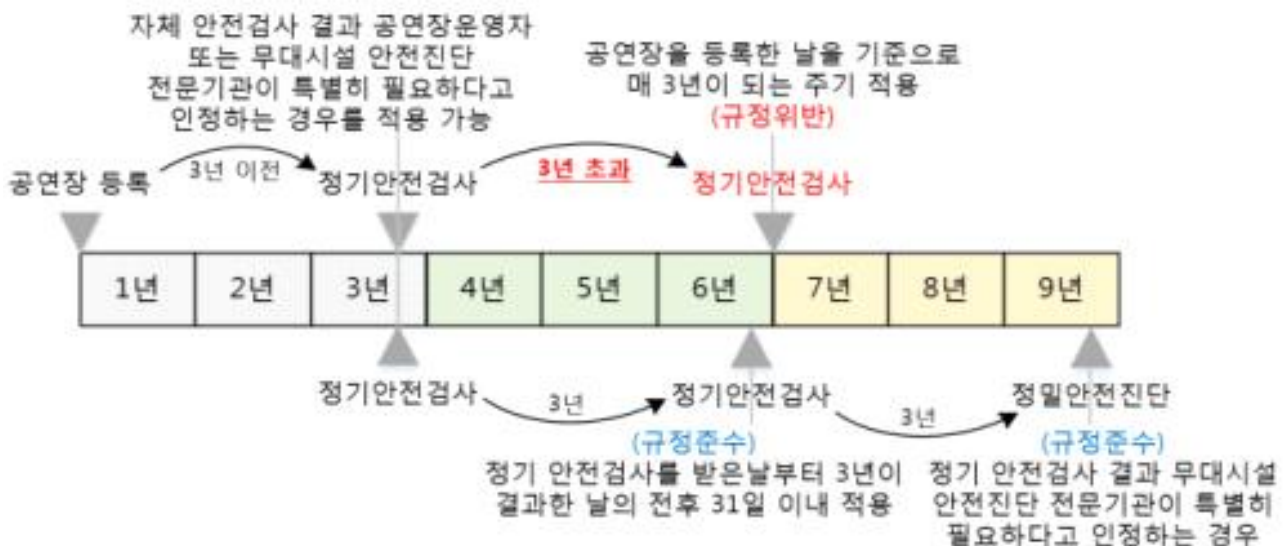
▪ 주기와 다른 안전진단(규정 준수의 경우)

-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기와 다르게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나,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기와 다르게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 주기를 초과하여 안전진단 실시 (규정 위반)

- "등록한 날" 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31일)을 초과하여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31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안전진단 주기를 적용해야 함.



▪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 및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의 기준

-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산정에서 법 제12조제2항제2호와 제12조제3항제2호의 안전진단을 받은 날의 기준은 안전진단 계약이 종료되는 날을 의미함.

2. 규정 및 내용 2 :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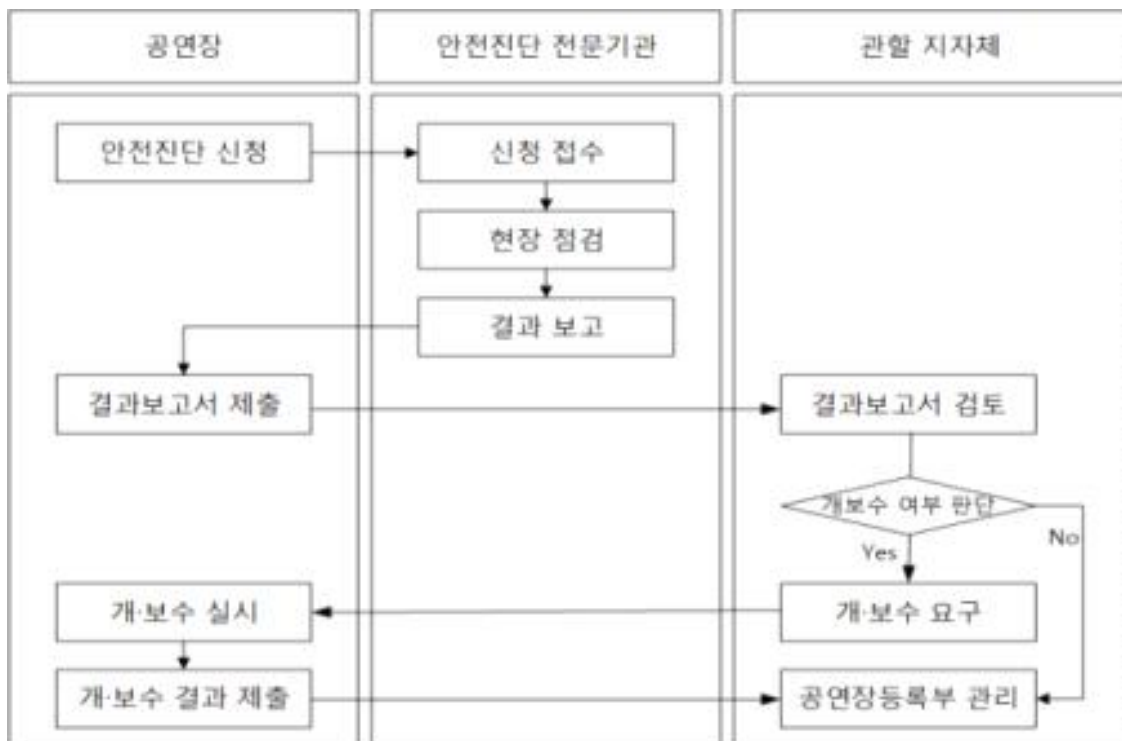
1) 관련 법조항

- 법 제12조·제12조의4, 영 제10조·제10조의3,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2) 안전진단 종류별 결과 처리

안전진단 구분	결과 처리 방법
설계검토	안전진단기관은 설계검토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u>공연장운영자는 동 검토결과를 이행</u> 하여야 한다.
등록 전 안전검사	안전진단기관은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u>공연장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제출</u> 하여야 한다. (공연장 등록 신청서에 포함)
정기 안전검사	안전진단기관은 정기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u>공연장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제출</u> 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u>공연장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제출</u> 하여야 한다.
자체 안전검사	<u>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에 의거</u>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 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3) 안전진단 관리 체계



3)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완 명령 ☞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 안전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관할 지자체는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게 제출해야 함

4) 안전진단 결과 확인 ☞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 관할 지자체에서 관내 공연장의 안전진단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안전진단 결과 확인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안전진단기관,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함

3. 규정 및 내용 3 : 무대시설 변경 시 공연장 등록 변경

1) 관련 법조항

- 법 제9조제2항, 규칙 제6조

2) 등록 변경 절차

- 리모델링 등으로 무대시설(무대기계·기구)가 증가한 경우 규칙 제6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공연장 등록을 변경해야 함
- 규칙 제6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변경된 무대기계·기구에 대하여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실시
-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변경등록 신청(시설설치내역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안전진단 결과)

3) 변경 등록 승인 판단 기준 ☞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변경 등록 신청을 반려
-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를 요구

4.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1) 행정처분 (법 제33조제1항제6호, 규칙 제7조 및 별표2)

관할 지자체는 공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위 반행위	근거 법조문	공연장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공연자에 대한 공연활동정지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위 반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위 반
카.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6호	7일	15일	1 개 월			

2) 폐쇄조치 (법 제34조)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삭제
 2.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3) 과태료 (영 제24조 및 별표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관할 지자체는 공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하.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2호			
1)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2) 무대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4. 중점 관리 사항

공연장 등록 신청 서류에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어 등록 전의 안전진단 관리는 비교적 수월하다. 하지만 공연장 등록 후, 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은 공연장운영자가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실시 주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안전진단 주기와 사후 관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연장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위반사례

- 안전진단 미실시
- 안전진단 주기 미준수

※ 공연장이 가장 최근에 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행 일자는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www.kossis.or.kr)에서 확인 가능

제6장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www.kossis.or.kr)

1. 규정 및 내용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 공개

1) 관련 법조항

- 법 제12조의7, 규칙 제6조의15

2)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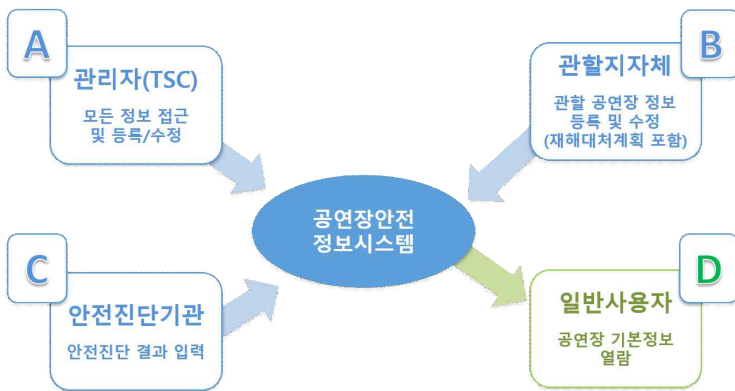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서 수집 및 관리하는 정보

구분	정보 내용	관련 법조항
공연법 제12조의7	<u>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현황</u>	<u>공연법 제9조</u>
	<u>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u>	<u>공연법 제11조</u>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공연법 제11조의4
	사고보고의 내용	공연법 제11조의6
	안전검사등의 결과	공연법 제12조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현황	공연법 제12조의2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5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공연법 제11조의5
	안전검사등의 결과를 평가한 정보	공연법 제12조의4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

구분	정보 내용
공연법 제12조의7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u>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u>
	<u>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u>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검사·점검 등의 결과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5	공연장의 등록·변경등록·폐업에 관한 정보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안전검사등의 결과를 평가한 정보

3)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성 및 주체별 권한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활용방법

<https://youtu.be/s276IOA3VuU>



구분	주체	권한
A	관리자 (TSC)	- 모든 상세정보 접근 및 등록/수정과 시스템 운영 및 관리
B	관할지자체	- 관할 공연장 정보 등록(신규) 및 수정(변경/폐업) - 공연장 및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입력 - 관할 공연장 안전진단 수행 여부 및 결과 확인 - 공연장 안전교육 수료 정보 확인* * 2026년부터 법정 안전교육 수료 정보 제공 예정
C	안전진단기관	- 안전진단 결과 입력 및 결과보고서 업로드
D	일반 사용자	- 로그인 없이 기본정보 열람 가능

4) 관계 행정기관(관할 지자체) 권한 및 요청사항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공연법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장관은 공연장 운영자, 안전진단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관계 행정기관(관할 지자체)의 권한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행 여부 및 결과 확인
- 공연장 및 공연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수료 정보 확인

- 관계 행정기관(관할 지자체)에 대한 요청 사항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회원가입 요청**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 관할 공연장 정보 등록(신규 등록 공연장) 및 수정(변경 등록 및 폐업 공연장)*

* 사전 조사를 통해 1,530개 공연장이 등록되어 있음(폐업 공연장 포함)

- **재해대처계획 입력**(등록공연장 : 매년 초 및 공연장 신규 등록 시, 공연장 외 공연 : 재해대처계획 접수 후 우선 입력* → 추후 보완사항 발생 시 최종내용 입력)

* 공연장 외 공연현황 사전파악 필요

※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인계 시 후임자에게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등록사항 필수전달

제7장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공연 및 공연장의 범위

공연법 제2조(정의)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극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순번	질문	답변
1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의 예시	상가 홍보 행사(개점, 세일 등), 패션쇼, 게임 홍보 행사 등
2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동굴관람장의 내부에서 입장한 동굴관람객을 대상으로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무료로 공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연을 하는 시설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해당하는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동굴관람장의 내부에서 입장한 동굴관람객을 대상으로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무료로 공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연을 하는 시설은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유) 유원지시설 중 하나인 동굴관람장 내부의 전시품 관람 등을 위하여 입장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연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의 관람객이 있는 경우에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공연을 유료인 <u>동굴관람장의 관람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u> 하는 것이라면, 이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에 해당되어 「공연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공연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 재해대처계획

순번	질문	답변
1	관람인원 1천명 이상인 공연장 외 공연에서 「공연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 내 소음관리 사항 추가 필요 여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및 「2024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상 안전관리계획에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소음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연법」과 개별 적용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 신고 내 의무 작성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관람인원 1천명 이상인 공연장 외 공연에서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가 행정안전부 「2024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의 매뉴얼 적용대상 중 “개별 법령에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여부	○ 축제에 공연이 포함되는 경우 「2024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의 매뉴얼 적용대상의 “개별 법령에 따라 개최되는 공연·행사 등의 경우 그 법령에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 등을 따를 수 있고”에 해당되며, ○ 이 경우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신고하고, 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은 「공연법」에 따라 각각 신고되어야 합니다. ○ 또한 「2024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의 매뉴얼 적용대상은 공연이 포함된 축제행사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할 때,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작성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3	공원, 운동장 등 넓은 공간에서 여러 개의 공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재해대처계획을 하나로 묶어서 신고해도 되는가?	같은 공연 타이틀 아래 여러 세부 공연이 묶여 있는 경우는 재해대처계획을 하나로 묶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예 : 무슨무슨 음악회 아래 여러 공연행사가 같은 공간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
4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1,000명 이상 관람객의 산정기준	순간 최대 관람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9 제1항제1호」) 사전에 관람객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사항이므로 가능한 보수적으로 예상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예 : 해당 장소에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예상 관람객으로 산정)
5	재해대처계획서 신고 내용을 수리하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관할 지자체의 업무는 종료되는가?	현행법상 공연의 안전성 여부를 지자체 담당자가 판단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동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필요시 보완 요구) 다만, 보다 안전한 공연환경을 위해서 공연전 합동 안전점검 및 현장안전조치계획에 대한 협의 등 관내 안전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 등)과 사전협의를 권고합니다.
6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을 공연 시작 14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고 이후 신고하였다면 미신고에 해당하는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가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에 해당합니다.
7	공연장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공연을 실시하였을 때와 재해대처계획 신고기간이 지나 신고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차이가 있는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더라도 공연법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미신고로 간주하며 행정처분 및 과태료도 동일합니다.

3. 안전교육

순번	질문	답변
1	연소·연로 공연자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온라인 교육받기 힘듦(회원가입절차, 수강방법 등 디지털소외계층) 교육대체방안은 없는지?	「공연법」에서는 공연자 안전교육의 시행방법 및 이수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 시행주체인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연자 안전 현장교육 안내서(안전자료 아카이브- 도서자료- 기타)에서 제시한 3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연자 교육 이수의 방식에서 반드시 개별 온라인 이수증 제출만 가능한지, 출연진 등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실시 및 증빙자료(사진, 서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이 불가한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공연자 안전교육에서 반드시 개별 아이디로	방법 1. 공연장 운영자가 현장에서 공연자에게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안전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 방법 2. 온라인(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공연자 안전교육(출연자편, 스태프 및 작업자편) 수강하여 이수하도록 하고(55분) 현장에서 5분 이상 안전교육 시행 ※ 공연자 안전교육의 주체는 공연장 운영자이며,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온라인 안전교육은 보조적인 수단임 (공연장운영자의 5분 교육이 없으면 무효) 방법 3.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연자 안전교육 동영상 상영하거나 제공하여 공연자에게 시청하게 하고(55분), 현장에서 5분 이상 안전교육 시행 ※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공연자 안전교육은 법적 의무교육시간에 대한 보완재로서 공연장 운영자의 교육을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활용방법은 교육 주체인 공연장 운영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2	1~2달간 진행하는 공연의 경우는 처음 공연시작전 1회만 공연자 안전교육을 진행 가능?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연이 반복되며, 공연자가 동일한 경우 처음 공연시작전 1회만 안전교육을 진행하면 됩니다.
3	공연자 변경이 있을때는 변경된 공연자만 별도 교육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연이 반복될 때, 중간에 공연자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공연자에 대해서만 안전교육을 진행하면 됩니다.
4	공연장외 공연의 경우 안전관리조직(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방법과 처리방법은?	○ 공연장외 공연에서 예상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조직(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을 구성하여야 하고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4시간, 8시간)을 받아야

		하며 이수증을 재해대처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 경우 공연자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공연 전 1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단,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연이 반복되며, 공연자가 동일한 경우 처음 공연 전 1시간만 안전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	--	--

4. 방화막

순번	질문	답변
1	방화막 의무설치 대상 공연장 선정은 어떻게?	○ 공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공연장의 경우 방화막 설치 의무대상입니다. ○ 방화막 의무설치 대상 공연장은 문체부 또는 관할 지자체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안전지원센터를 통해 배포한 “공연장 방화막 설치 및 성능 안내서”를 검토하여 방화막 의무설치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 방화막 설치 및 성능 안내서”는 공연안전지원센터 웹사이트 www.stagesafety.or.kr ⇨ 안전자료 아카이브 ⇨ 도서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방화막 신설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조건은?	해당 사업은 국비(50%)와 지방비(50%) 매칭사업으로 반드시 지방비를 확보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지원계획은?	2026년에 국비지원을 희망하는 공연장을 조사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 법정기한('26.5.3.)까지 설치하여야 함. ※ '25년 방화막 설치 국비를 지원받은 지자체(공연장 15개소)는 '25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야합니다.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원칙적 이월 불가)

5.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순번	질문	답변
1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현황과 실제 활용시기는?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정보 열람이 가능 (www.kossis.or.kr) ○ 2024년 재해대처계획 입력 전산화 ○ 2025년 안전교육 정보 수집 체계 개발 (추진 중) ○ 2026년 재해대처계획서를 통한 위기징후 감시체계 고도화 ○ 2027년 공연장 피난 안내도 DB 구축 ○ 2028년 안전진단결과 제출 전산화

6. 무대예술전문인의 의무 배치

순번	질문	답변
1	공연장 별로 배치? 아니면 여러 개 공연장 합쳐서?	○ 「공연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2개이상의 공연장으로 구성되 복합공연장의 경우에는 개별공연장별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바, 배치기준을 개별 공연장 기준으로 봅니다. ○ 그러나 300석, 200석, 100석 공연장이 하나의 복합공연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동 배치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입법미비의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최소한의 무대예술전문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2	공공 공연장만 의무배치?	공연법상 공공 공연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의 경우 의무배치이므로 민간 공연장의 경우 의무배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음. 다만, 무대예술전문인의 양성 및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공연장도 동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 공연법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배치 의무가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할 때 공연상황 구분 없이 전문인이 무조건 상주해야 하는지?	법에 명시된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 의무 대상 공연장에 무대예술 전문인은 배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상주 여부는 공연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공연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연장 운영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전문인이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 공연상황에 따라 전문인이 교대근무를 해야하기에 복무상황에 따라 대체인력(외부) 투입해도 되는지?	법에 명시된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였다면 임용하여 배치하였기 때문에 배치된 걸로 보입니다.. 공연장에 상시상주 의무를 법에 명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가 필요 시 대체인력 투입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되며, 다만 공연법 제14조에 따른 자격 보유자여야 합니다.

7. 기타

순번	질문	답변
1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에 대한 공연장 운영자의 법적 책임범위?	○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범위는 공연 환경, 공연 관리 체계, 공연장·기획사·공연단체 간 계약 관계 등으로 인해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공연법」 상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공연법」 제11조와 제12조에 규정된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주체는 공연장 운영자이며 안전에 관한 계약 관계 등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예상 관람객 1천명 이상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의 경우, 공연을 하려는 자와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록 1 안전사고 예방 사례 교육]

☞ 사고 사례 1. 무대세트 작업 중 스테프 추락사고

- 일시 : 2018년 9월 6일
- 장소 :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내용 : 공연 준비 중이었던 지하 승강무대 바닥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사망
- 사고 경위
 - 9월 7일 공연을 위하여 9월 6일에 승강무대를 통해 무대세트를 반입
 - 사고자는 무대세트에 대하여 도색 작업을 진행 중, 도색 결과를 멀리서 확인하기 위하여 뒷걸음 치다가 지하 승강무대 바닥으로 추락



☞ 사고 사례 2. 콘서트 무대철거 추락사고

- 일시 : 2022년 7월 31일
- 장소 : 강릉종합운동장
- 내용 : 가설무대 철수를 위해 상부 진입 중 높이 20 m 지점에서 미끄러져 추락
- 사고 경위
 - 무대바닥, 음향, 조명 등 철거가 완료되고 마지막 단계인 가설무대 해체 진행
 - 사고 당일 강수량 11.5 mm 으로 가설무대 이동 통로, 사다리 등이 미끄러웠음
 - 가설무대 구조물 해체를 위해 상부 20 m 지점에서 이동 중 미끄러져 추락



☞ 사고 사례 3. 공연장 화재 사고

- 일시 : 2007년 12월 12일
-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내용 : 공연 중 화재 발생으로 상부 무대시설 전소, 하부 무대시설 침수(추정 피해액 194억원) 인명피해 없음
- 사고 경위
 - 오페라 '라보엠' 공연 중 무대에 설치된 난로에서 불꽃이 번져 막 등 무대시설을 태움 (배우가 성냥불을 켜서 벽난로에 던지는 장면을 연기하던 중 화재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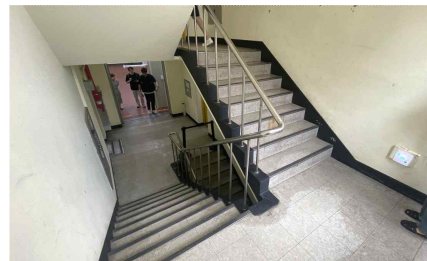
📁 사고 사례 4. 공연장외 공연(야외) 입장 중 안전사고

- 일시 : 2024년 6월 15일
- 장소 : 인스파이어 디스커버리 파크
- 내용 : 야외 공연장 입장 대기 중 안전사고로 경상 2명 발생
- 사고 경위
 - 야외 공연이 당초 11:30에서 관람객 입장이 늦어지는 상황을 고려 12:30으로 변경
 - 입장을 못한 관람객이 공연 지연을 알지 못하고, 먼저 들어가려는 인파가 일시적으로 몰림
 - 인파가 몰리는 과정 중 펜스가 넘어지면서 1명 타박상 병원이송, 1명 과호흡 현장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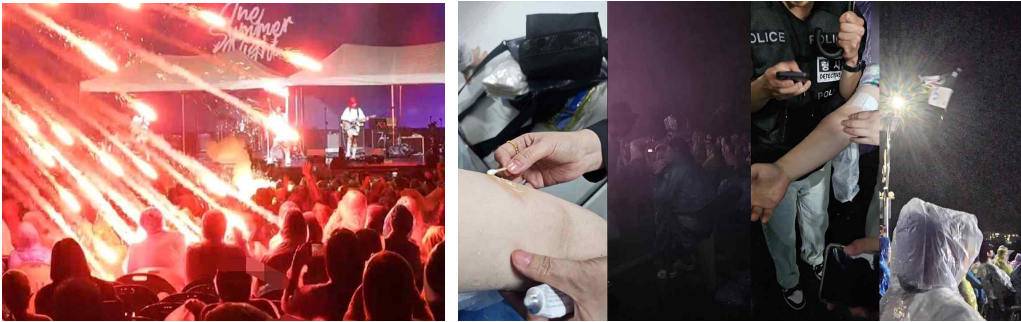
📁 사고 사례 5. 공연장 외 공연(실내) 인파밀집

- 일시 : 2024년 7월 31일
- 장소 : 에스팩토리
- 내용 : 공연장 외 실내공연에서 인파사고 위험 우려로 공연 중단
- 사고 경위
 - 1층, 3층에서 각각 DJ가 출연하는 디제잉쇼 진행
 - 3층에 유명 DJ가 출연한다는 SNS를 본 1층 관람객이 일시적으로 3층 이동계단(1개소)으로 몰려 호흡곤란을 느낀 관람객이 경찰에 신고
 - 출동한 경찰이 인파사고 우려로 공연중단과 현장정리 조치



📌 사고 사례 6. 공연장 외 공연(야외) 폭죽사고

- 일시 : 2024년 9월 6일
- 장소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연장
- 내용 : 공연중 폭죽이 관람객쪽으로 떨어져 부상자 발생
- 사고 경위
 - 공연중 무대효과로 폭죽을 사용
 - 폭죽 방향이 하늘로 향하지 않고 일부가 관람객쪽으로 떨어져 부상자(화상) 17명 발생
 - 폭죽이 비에 젖어 불완전 연소하면서 위로 솟구치지 않고 옆으로 날아간 것으로 조사



📌 사고 사례 7. 공연 리허설 중 무대장치 충돌사고

- 일시 : 2023년 3월
- 장소 : 세종문화회관(서울시)
- 내용 : 리허설 도중 출연자가 무대장치와 충돌하여 부상사고 발생
- 사고 경위
 - 오페라 무대에서 코러스로 참여한 출연자가 리허설 도중 퇴장할 때 천장에서 내려오는 무대장치와 충돌



📌 사고 사례 8. 공연 리허설 중 오케스트라 피트 추락사고 1

- 일시 : 2025년 8월 22일
- 장소 : 세종예술의전당(세종시)
- 내용 : 공연장에서 리허설 도중 무용수가 오케스트라 피트로 추락하여 부상사고 발생
- 사고 경위
 - 리허설 중 무대 앞쪽에서 연기하던 무용수 2명이 바닥으로 약 3 m 내려가 있던 오케스트라 피트로 추락



📌 사고 사례 9. 공연 리허설 중 오케스트라 피트 추락사고 2

- 일시 : 2025년 8월 23일
- 장소 : 밀양아리랑아트센터
- 내용 : 공연장 리허설 무대 점검과정에서 공연단체 단원(조안무)가 약 2 m 아래 오케스트라 피트로 추락하여 부상사고 발생
- 사고 경위
 - 무대조명 메모리 작업 중 조안무가 무대를 통해 객석으로 이동하려던 때 세트 전환 리허설을 위해 하강 중인 오케스트라 피트로 추락

※ 공공 공연장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국회의원 임오경 발의, 2025.7.18)

[부록 2 공연 관객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좌석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목 차 -

1. 공연 주최자	31
2.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	33
3. 관할 시·군·구 담당자	34
[부록 A] 스탠딩 공연 수용인원 산출 예시	35
[부록 B] 비상 시 현장 대응 조치 가이드(압사 사고 관련)	38
[부록 C] 대관 운영 규정을 통한 안전 확보 방안	39
[부록 D] 공연법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42
[부록 E] 안전거리 설정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례	42

본 자료는 스탠딩 공연 등 좌석이 정해지지 않은 공연에서 공연 주최자,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 관할 지자체가 관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서 법적 의무나 강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공연의 특성과 시설 및 장소의 운영 및 환경 상황에 맞게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 주최자

단계	구분	점검 사항	확인
공연 준비	[A] 공연시설 및 장소 적정성 ¹⁾	a) 예상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인가?	
		- 시설 및 장소의 총 수용인원을 확인하였는가? [부록 A 참고] * 시설 및 장소 관리자가 총 수용인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공연 주최자와 시설 및 장소 관리자가 협의하여 적정한 총 수용인원을 확인해야 함	
		- 시설 및 장소의 총 수용인원 산정 시, 출구와 계단의 유효너비를 고려하였는가? [부록 A 참고] * 시설 및 장소 관리자가 총 수용인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공연 주최자와 시설 및 장소 관리자가 공동으로 출구와 계단의 유효너비를 고려하여 총 수용인원을 산정해야 함	
		- 객석 구역의 관람 인원 산정이 적절한가? [부록 A 참고] * 시설 및 장소의 총 수용인원 > (관람 예상인원 + 공연자, 진행 및 경비 인력, 무대기술 인력 등을 모두 포함한 인원)	
		b) 공연시설 및 장소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였는가?	
		- 공연시설 및 장소에 관객의 이동을 제한할 장애물 또는 위험구역은 없는가?	
		- 폭염 또는 한파에 대한 대응 방안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 * 식수, 냉방, 난방 등	
		- 장소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과 물품*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에 따른 소방시설,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	
	[B] 군중 안전관리 계획 수립	a) 스탠딩 공연 시 인파 쏠림 및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분리 구획 설정	
		- 무대와 객석 1열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였는가? * 무대 특수효과 장치 안전구역, 안전관리 인력 이동 통로, 기타 구조물(스피커, 콘솔, 가벽)로부터의 안전거리 등을 고려 [부록 E 참고]	
		- 스탠딩 객석 구역 및 구획된 공간 사이에 안전관리 인력 이동 또는 응급환자 이송이 원활하도록 통로가 조성되어 있는가?	
		- 분리 구획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통제설비(바리케이드, 안전펜스 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가? * 무대 앞쪽의 경우에는 전용 바리케이드 설치, 이동 경로를 통제·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펜스 설치 권장	
		- 분리 구획에 통제설비를 적용할 경우, 구획된 공간으로 출입할 수 있는 간이 출입구가 무대 측을 향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는가?	
		- 분리 구획 간 관객 이동을 통제·관리하기 위해 구획 경계별 안전요원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b) 무대 앞쪽에서의 관객 몰림 관련 사항	
		- 무대 앞쪽의 관객 몰림에 대한 통제설비가 적절한가?	
		- 스탠딩 객석 구역 및 분리 구획 내에 관객관리 안전인력을 배치하여, 구역 내에서 관객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가?	
		- 스탠딩 객석 구역에 어린이의 입장 제한 조치를 하였는가? * 어린이의 경우 키가 작아 밀림, 넘어짐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주변 사람들과 안전요원 등이 위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무대 전면 등 관객 난입이 가능한 구역에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하였는가? *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실무 경험이 많은 자 등	
		- 스탠딩 객석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었는가? * 스탠딩 구역 직접 관찰 체계 또는 CCTV 설치 등	
		c) 공연시설 및 장소 내에서 타 구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 공연 공간이 분리된 경우, 공연 공간 사이의 이동과 쏠림에 대비한 안전계획이 있는가? * 각 공간별 수용인원 관리계획, 이동을 관리할 안전관리 인력 배치, 계단 이동 시 관객 분산 대책 등	

단계	구분	점검 사항	확인	
		- 관객 이동 경로 외 별도의 피난 경로를 확보하였는가? 만약,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 이동 경로와 분리할 사용계획은 있는가?		
	[C] 비상 대응계획 수립	a) 비상 대응계획 수립 관련 사항		
		- 군중 혼잡 사고 대비 및 대처, 관객 피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비상시 원활한 관객 피난을 위해, 비상 방송 장치, 확성기 등 비상 안내 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가?		
		- 응급차량 및 구조대원 진입 경로 확보 등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 집결지를 선정하였는가?		
	[D] 재해대처계획 작성 및 신고	a) 재해대처계획 작성 및 신고 관련 사항		
		- 1천명 이상의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필수항목이 빠짐 없이 적절하게 포함되었는가? [부록 D 참고]		
		- 공연시설 및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재해대처계획을 공연 개시 14일 전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였는가?		
	공연 시설 및 장소 사용	[E] 재해대처계획 실천	a) 재해대처계획 실천 관련 사항	
			-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 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전에 공지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는가?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공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고 있는가?				
- 안전관리조직 업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				
[F] 관객 안전관리인 력 배치 등		a) 관객 안전관리 인력 배치 [부록 E 참고]		
		- 'B. 군중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관객 안전관리인력이 지정된 구역에 배치되었는가?		
		- 공연시설 및 장소 출입구별* 관객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입·퇴장에 따른 안전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가? * 관객 이동동선, 출구, 구획분리구역 경계, 무대 전면 인파 집중 밀집예상구역 등		
		- 관객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구역*에 관객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가? * 가파른 계단, 난간대, 절개지, 바닥하중 취약 구역, 에스컬레이터 등		
		b) 관객 안전관리 인력 교육 및 비상 연락망 공유 등		
		- 화재 안전 절차, 비상시 피난 절차, 압사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의 상황 처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하였는가?		
		- 공연 안전관리조직, 협조기관 등의 비상 연락망을 공유하고, 비상 시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 체계(무전기, SNS 등)를 갖추었는가?		
		[G] 관객 안전 확보 조치	a) 관객 입·퇴장 전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 스탠딩 객석 구역에 이상 돌출부, 바닥 불균일, 바닥 미끄럼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는가?				
- 바리케이드, 안전펜스 등 통제설비가 견고하게 고정되었는가?				
- 구역별로 출입구를 지정하여 관객이 안전하게 분산 퇴장하도록 계획되었는가?				
- 모든 객석 구역에서 피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난 경로에 대한 식별 표시 (피난구 위치 및 피난경로 화살표 등)가 적합한가?				
b) 관객 입·퇴장 중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 공연 계획에 맞춰 정해진 시간과 구역에서 관객 입·퇴장이 이뤄지고 있는가?				
- 전체 관객 규모를 고려해 입구별 분산 입장, 입장 대기열 관리를 위한 대기 동선 확보 등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객 입·퇴장 중 군중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력 또는 장비가 배치되어 있는가?				

- 1) 공연시설 및 장소 적정성은 공연 주최자와 시설 및 장소 관리자가 공연정보와 공간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는 공연시설 및 장소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해당 시설 및 장소의 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

단계	구분	점검 사항	확인
일상 운영	[A] 시설 및 장소 안전 정보 제공	a) 공연시설 및 장소의 수용인원 적정성	
		- 시설 및 장소의 총 수용인원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부록 A참고]	
		- 시설 및 장소의 총 수용인원 산정 시, 출구와 계단의 유효너비를 고려하였는가? [부록 A 참고]	
		b) 시설물 사용 안전 규정 및 주요 설비에 관한 정보제공 등	
		- 시설 및 장소의 수용인원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안내되고 있는가?	
		-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및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되고 있는가?	
		- 시설 및 장소의 피난구조설비 및 피난 경로에 대한 정보가 눈에 잘 띄게 게시되어 있거나 방송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는가?	
		- 공연시설 및 장소 사용자가 수용인원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대관 규정 등 자체 안전규정을 마련하였는가?	
	[B] 시설 및 장소 점검/관리	a) 시설 및 장소의 점검·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상 용도에 맞게 해당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가 관리되고 있는가? * 관련 규정 : 건축물 관리법 제12조	
		-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그 점검 결과를 관리하고 있는가? * 관련 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시설 및 장소의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 취약 요인을 개선하였는가?	
공연 준비	[C] 공연 전 시설 점검	a) 공연 주최자 등 공연시설 및 장소 사용자와 공연 전 합동 점검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 등) 및 응급 장비의 수량 및 상태가 적정한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참고	
		- 피난설비(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등)가 정상 작동하고 있으며, 가려지지 않았는가?	
		- 피난 경로에 물건, 장애물 등을 설치 또는 적치하거나, 폐쇄 또는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가?	
		- 객석 구역 내 위험요인 및 관객 출입 제한 구역의 통제 조치가 적정한가?	
	[D]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및 재해대처계획 검토	a) 비상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시설 및 장소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정보와 비상 시 협조 기관 연락처 정보*를 공연 주최자에게 전달하였는가? *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담당자, 인근 병원 등	
		- 위험 상황 발생 시, 공연 중지 또는 중단 결정, 관객 대피 명령 등을 위한 연락망과 의사결정체계가 분명한가?	
		- 공연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및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b) 재해대처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 공연 주최자와 공동으로 재해대처계획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공연 시설 및 장소 사용 ³⁾	[E] 자체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점검	a) 자체 안전규정 준수 및 안전 관련 법령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시설 및 장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자체 안전규정이 공연 현장에 올바르게 적용·관리되고 있는가?	
		- 시설 및 장소 구역별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입장하지 않도록 입장 인원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초과 시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가?	
		- 시설 및 장소 구역별 바닥 허용 하중을 초과하는 인원수용 및 장비류의 반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 관객 입장 전 '[C] 공연 전 시설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 시설 작동 및 기능 등에 이상이 없는지 최종 점검하였는가?	
	[F] 관객 입·퇴장 모니터링	a) 관객 입·퇴장 시 안전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공연시설 및 장소 대관 신청서의 공연 계획에 맞춰 정해진 시간과 구역에서 관객 입·퇴장이 이뤄지고 있는가?	
		- 관객 입·퇴장 중 군중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 공연시설 및 장소 사용 중에는 시설 및 장소 관리자가 공연 주최자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체크리스트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관할 시·군·구 담당자

단계	구분	점검 사항	확인
공연 준비	[A] 재해대처 계획 점검	a) 재해대처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	
		- 예상되는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인 공연에 대해 재해대처계획을 공연 개시 14일 전에 신고받았는가?(등록된 공연장이 아닌 경우)	
		- 「공연법」에 따른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가? [부록 D 참고]	
		b) 스탠딩 객석 구역의 수용인원 및 관리 대책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의 정보에 따라 관람 예상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 및 장소인가? [부록 A 참고] * 시설 및 장소의 총 수용인원 > (관람 예상인원 + 공연자, 진행 및 경비 인력, 무대기술 인력 등을 모두 포함한 인원)	
		-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배치에 관한 계획*이 적정한가? * 관객 입·퇴장 출입구에 안전관리 인력 배치(경호원 등 전문인력 여부 등) * 스탠딩 객석 구역 내 안전관리 인력 배치(경호원 등 전문인력 여부 등) * 공연 관람 구역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인력 배치 * 위험구역(가파른 계단, 난간대, 절개지, 바닥하중 취약 구역, 에스컬레이터 등)에 대한 안전관리인력 배치	
		c) 유관기관 통보 및 지원 필요성 검토에 관한 사항	
		- 재해대처계획 신고 내용을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였는가?(「공연법」 제11조제1항) - 재해대처계획 신고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였는가?(권장사항)	
		- 재해대처계획 검토 시 대규모 공연 행사, 불특정 다수 대상 무료 공연 관람 등 군중 혼잡이 예상될 경우, 관내 경찰 및 소방 인력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는가?	
		d) 재해대처계획 검토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내용이 미흡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였는가?	
	[B] 현장 점검 (권장)	a) '[A] 재해대처계획 점검'에 따라 현장 점검이 요구되는 경우	
		- 현장 점검 시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적합하며,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가 이뤄지고 있는가?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피난안내,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배치 등	
공연 시설 및 장소 사용	[C] 이상징후 정보 수집 및 전파 연락체계	a) 주변 이상징후 정보 수집 및 전파 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 공연시설 및 장소 인근의 이상징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소방서, 경찰서 등)	
		- 공연시설 및 장소 인근에서 재해, 대형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공연에 위험이 가해질 경우, 이를 공연 주최자 또는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는 연락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공연 종료 후	[D] 안전 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a)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에 관한 사항	
		-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공연이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자로부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았으며, 사용 금액 및 용도가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하였는가?	

[부록 A] 스탠딩 공연 수용인원 산출 예시

[1] 시설 및 장소 총 수용인원 산출 관련 자료

자료 출처	발행 기관	면적 기준 총 수용인원
NFPA 101	미국 NFPA (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1인 0.46 m ² 를 할당하도록 권장(일반적으로 서서 보는 관람 구역 기준)
IFC section 1004 (Table 1004.5)	미국 IFC (International Fire Code)	- 스탠딩 공간의 1인 점유 면적은 2 ft ² (0.4645 m ²)로 함
Technical Standards for Entertainment Places	영국 극장 기술인협회(ABTT)	- Bar, Hall 또는 좌석이 없는 구역, 스탠딩 관중용 뮤직 및 유사 문화 공간의 객석 당 허용 공간 계수 0.45 m ²

[2] 좌석이 없는 스탠딩 객석 구역에서의 입석 관람 인원 관련 자료

자료 출처	발행 기관	면적 기준 입석 관람 인원
ESG (Event Safety Guide)	미국 ESA (Event Safety Alliance)	- 1인 점유 면적이 0.46 m ² 이하 : 보행자의 움직임이 매우 제한됨 - 1인 점유 면적이 0.2787 m ² 인 경우 : 의도치 않은 접촉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됨 - 1인 점유 면적이 0.1858 m ² 인 경우 : 여러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음

[3] 출구의 유효너비 관련 자료

자료 출처	발행 기관	출구 너비 적용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 -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IFC section 1005**	미국 IFC (International Fire Code)	- 출구(계단)의 너비 산출 : (7.6 mm / 1명) 이상으로 계산 [단,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5.1 mm / 1명)으로 적용 가능] - 출구(평지)의 너비 산출 : (5.1 mm / 1명) 이상으로 계산 [단,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3.8 mm / 1명)으로 적용 가능]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관람실”의 정의가 스탠딩 객석 구역(입석)에 특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 출구의 유효너비 관련 해외 규정(IFC)에서는 바닥면적이 아닌 수용인원 기준으로 그 출구의 너비를 정하고 있으므로, 시설물 총 수용인원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

[4] 총 수용인원 및 스탠딩 객석 구역 관람인원 산출 시 고려 사항

- 실내 시설물에서의 총 수용인원은 격벽이 있는 거실 바닥면적에 따라, 관련 해외규정(NFPA 101, IFC section 1004)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권장함. (특히 IFC의 경우에는 총 수용인원에 따른 출구의 너비 기준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 다만, 실내 시설물의 건축구조(출구 형태, 출구 너비, 경로 등)에 따라 비상 대피 시간이 다르므로, 위의 해외 규정을 참고하되 비상시 대피 시간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총 수용인원을 검토 및 보완하는 것을 권장함.
- 실내 시설물에서의 스탠딩 객석 구역은 그 시설물의 일부 구역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스탠딩 객석 구역 내부에서의 관람객 1인당 점유 면적은 시설물의 총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되, 관람객 1인당 점유 면적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군중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함.

*관람객 점유 면적에 따른 위험도 참고 : ESG(Event Safety Guide)

- 별도의 출구가 없는 실외 공연 장소일 경우에는 총 수용인원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으므로, 스탠딩 객석 구역의 관람객 1인당 점유 면적에 관한 사항만 고려하여 검토 가능

[5] 수용인원 산출 예시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람실”의 바닥면적으로만 그 유효너비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규정에서의 “관람실”이 “스탠딩(입석)”에 특정하지 않기에, “스탠딩(입석)”을 고려한 수용인원 산출 조건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해외 규정에서는 바닥면적이 아닌 수용인원으로 출구의 너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원활한 관객 입·퇴장 운영 및 비상시 안전한 대피 등을 위해 해외 규정(국제소방코드 IFC)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총 수용인원을 산출하는 것을 권장함
- 총 수용인원 산출 예시에 따라, 시설물의 출구 너비로 인하여 총 수용인원이 한정되는 경우, 건축물 구조 및 소방시설 개선 조치를 통해 면적당 최대 수용인원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함

1) 실내 건축시설의 총 수용인원 산출 예시

조건 예시	-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실내 건축물에서의 공연 - 실내 시설물의 바닥 면적은 1,000 m²로 가정 - 1인 점유 면적을 0.46 m² 적용 시 (NFPA 101, IFC section 1004 준용)
출구 유효너비 적용 기준	- 출구(계단)의 너비 산출 : (7.6 mm / 1명) 이상으로 계산 [단,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5.1 mm / 1명)으로 적용 가능] - 출구(평지)의 너비 산출 : (5.1 mm / 1명) 이상으로 계산 [단,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3.8 mm / 1명)으로 적용 가능]
수용인원 검토	① 면적당 수용인원 : 2,173명 (단, 아래의 출구 형태와 자동 스프링클러 및 비상 안내·경보 장치 설치 유·무에 따른 출구 너비 합계 이상이어야 함) - 면적당 수용인원 산출 : 1,000 m² × (1인 / 0.46 m²) = 2,173명 ② “①”에서 산출된 면적당 수용인원인 2,173명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출구가 “계단” 형태일 경우, 출구 너비 합계가 11.08 m*가 되어야 함 (단, 자동 스프링클러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없는 경우의 출구 너비 합계는 16.51 m**로 적용) *2,173명 × (0.0051 m / 1명) = 11.08 m **2,173명 × (0.0076 m / 1명) = 16.51 m - 출구가 “평지” 형태일 경우, 출구 너비 합계가 8.26 m*가 되어야 함 (단, 자동 스프링클러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없는 경우의 출구 너비 합계는 11.08 m**로 적용) *2,173명 × (0.0038 m / 1명) = 8.26 m **2,173명 × (0.0051 m / 1명) = 11.08 m

	③ 출구 형태와 자동 스프링클러 및 비상 안내·경보 장치 설치 유·무에 따른 출구 너비가 “②”의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실제 출구 너비 합계에 따라 최대 수용인원 제한 검토가 필요함 - (예시1) 계단 형태의 출구 너비 합계가 5 m이며, 자동 스프링클러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없는 경우 : $5 \text{ m} \div (0.0076 \text{ m} / 1\text{명}) = 657\text{명}$(소수점 이하 삭제) - (예시2) 평지 형태의 출구 너비 합계가 5 m이며, 자동 스프링클러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있는 경우 : $5 \text{ m} \div (0.0038 \text{ m} / 1\text{명}) = 1,315\text{명}$(소수점 이하 삭제)
--	--

2) 좌석이 없는 스탠딩 객석 구역의 관람 인원 산출 예시

조건 예시	-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실내 건축물에서의 공연 - 실내 시설물의 바닥 면적은 1,000 m²로 가정 - 실내 시설물 중 스탠딩 객석 구역의 면적이 500 m²로 가정
스탠딩 객석 구역 관람 인원 적용 기준	※ ESG(Event Safety Guide) 참고 - 1인 점유 면적이 0.46 m² 이하 : 보행자의 움직임이 매우 제한됨 - 1인 점유 면적이 0.2787 m²인 경우 : 의도치 않은 접촉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됨 - 1인 점유 면적이 0.1858 m²인 경우 : 여러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음
수용인원 검토	① 위의 조건 예시에 따라 스탠딩 객석 구역 관람 인원 산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면적당 수용인원 0.46 m² 적용 시 : $500 \text{ m}^2 \times (1\text{명} / 0.5 \text{ m}^2) = 1,087\text{명}$ - 면적당 수용인원 0.2787 m² 적용 시 : $500 \text{ m}^2 \times (1\text{명} / 0.2787 \text{ m}^2) = 1,794\text{명}$ - 면적당 수용인원 0.1858 m² 적용 시 : $500 \text{ m}^2 \times (1\text{명} / 0.1858 \text{ m}^2) = 2,691\text{명}$ ② “1) 실내 건축 시설의 총 수용인원 산출 예시”에 따라, 실내 시설물의 총 수용인원이 2,173명일 경우, 스탠딩 객석 구역의 관람 인원과 그 외 공연시설을 사용하는 관계자와 좌석 관객의 합계가 2,173명 미만이어야 함. - “①”의 면적당 수용인원 0.2787 m²에 따른 1,794명은 허용 가능(단, 그 외 인원을 포함한 전체 인원이 시설물 총 수용인원 미만일 경우) - “①”의 면적당 수용인원 0.1858 m²에 따른 2,691명은 허용 불가(시설물 총 수용인원 초과) ③ 단, 스탠딩 객석 공간의 1인 점유 면적이 낮으면, 해당 공간에서의 군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훈련된 전문 관객 안전관리인력 배치와 군중 통제 대책 강화 등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 예시는 국내외 관련 자료에 따라 작성된 참고자료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개별 공연의 특성과 시설 및 장소의 운영 및 환경 상황, 안전 계획 및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실제 공연에서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 m²당 4명의 수용인원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부록 B] 비상 시 현장 대응 조치 가이드(압사 사고 관련)

[1] 군중 혼잡 발생 시

- 공연 중 군중 혼잡 발생 : 공연 관계자는 공연 중지 후, 출연진에게 군중 혼잡에 의한 중단임을 밝히고, 공연 음향 시스템과 관객 안전관리인력으로 혼잡 상황을 수습하여야 한다.
- 공연 입·퇴장 시 군중 혼잡 발생 : 시설물 비상 방송시스템, 휴대용 확성기 등을 통해 혼잡 상황 발생을 모든 관객에게 안내하고, 모든 관람객의 이동을 멈추도록 지시 후, 혼잡 구역의 군중 관리 및 통제 조치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군중 혼잡으로 인한 압사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모든 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의 관객 행동 요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 공연 중 스탠딩 객석 구역에서의 압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사항 전파

(1단계) 공연 중지 후 압사 사고 발생 위험 안내

(2단계) 앞 사람을 밀지 않고, 양팔로 가슴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며, 넘어졌을 땐 몸을 옆으로 웅크리도록 안내

(3단계) 군중 이동이 멈추면 서서히 뒤로 한 보씩 이동 안내

※ 공연 입·퇴장 등 이동 시 압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사항 전파

(1단계) 압사 사고 발생 위험으로 이동 중지 안내

(2단계) 앞 사람을 밀지 않고, 양팔로 가슴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며, 넘어졌을 땐 몸을 옆으로 웅크리도록 안내

(3단계) 관객 밀집 구역의 군중 관리 및 통제 조치(혼잡 상황 정리)

- 군중 혼잡 상황이 정리되더라도 시설 및 환경 특성에 의해 재발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중 혼잡 발생 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하며, 군중 혼잡이 지속되거나 악화하여 압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전체 공연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압사 사고 환자 발생 시

- 스피커 등 확성기를 활용하여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든 관객에게 알리고 군중 이동을 멈추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압사 사고 구역까지 관객 안전관리인력이 접근하여 응급환자 이송 또는 현장 응급조치를 위해 주변 관객 이동 지시 및 통제 조치하여야 한다.
- 압사 사고 구역이 평지가 아닐 경우, 환자를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평지로 이송 조치
-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시설일 경우, 자동심장충격기를 응급조치 구역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환자의 의식 및 호흡 상태를 확인하면서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119 전화 연결과 동시에 실시하며, 119 전화 연결 성공 후 응급환자 조치를 위한 의료 지도를 받으면서 응급조치 시행 필요)
-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경우, 2인 1조로 심폐소생술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응급 조치하여야 한다.

[부록 C] 대관 운영 규정을 통한 안전 확보 방안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가 공연 안전을 위해 공연 주최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사항은 자체 대관 운영 규정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며,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는 공연 현장에서 공연 대관 규정이 올바르게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대관 운영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구분	내용
대관 승인의 거절 및 취소	시설 및 장소 운영자는 공연 주최자가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을 거절 및 취소할 수 있음
시설 및 장소 사용의 제한	- 시설 및 장소 운영자는 공연 주최자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사용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음 - 관련 법령(공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대관운영규정의 안전 요구사항 및 재해대처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선착순 입장, 수용인원 초과 등 관객 혼잡에 의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 폭설,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 신고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경우 시설 및 장소 운영자와 공연 주최자가 공동으로 관할지자체에 공연 개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함 - 공연 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예. 공연 개최 20일 전까지) 시설 및 장소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설 및 장소 운영자의 검토 결과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관할지자체에 14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공연 전 안전점검	- 공연 주최자는 시설 및 장소 운영자와 공연전 아래의 사항에 대해 합동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소화설비 및 응급장비의 상태 점검 - 피난설비(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등)의 상태 점검 - 수용인원 대비 피난 경로 확보 상태 점검 - 객석 구역 내 위험요인 및 관객 출입 제한 구역 점검 - 응급실, 응급조치인력 및 응급차량 등의 배치 계획 점검 - 공연 주최자는 합동 사전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파악된 경우, 시설 및 장소 운영자와 협의하여 공연 전까지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관객 안전 관리	- 공연 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에 수립한 수용인원 및 군중관리 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객 입장부터 퇴장까지 관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 공연 주최자는 관객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을 실시하여야 함

[2] 대관 운영 규정 예시

※ 참고

대관 운영 규정 예시는 관객 안전 관리 분야에 필요한 주요 내용만을 다룬 것이므로, 공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추가 사항(시설물 안전 관리, 특수효과 안전 등)은 별도의 자료 조사 등을 통해 내부 운영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을 권장한다.

□ 대관 승인의 거절 및 취소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는 대관신청·승인된 공연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대관승인을 거절하거나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운영규정의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기한 내에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 및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시설 및 장소 사용의 제한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는 승인된 공연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시설 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관련 법령(공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대관운영규정의 안전 요구사항 및 재해대처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 선착순 입장, 수용인원 초과 등 관객 혼잡에 의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4. 폭설,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 재해대처계획

- ① 대관 사용자는 공연 개최 ○○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출한 재해대처계획서는 관련 법령 및 대관운영규정의 안전 요구사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는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대관 사용자는 재해대처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재해대처계획서를 보완하여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에게 제출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대관 사용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공연 개최 14일 전까지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공연 전 안전점검

- ① 대관 사용자는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와 함께 아래의 사항에 대해 공연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관 사용자는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의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소화설비 및 응급장비의 상태 점검
2. 피난설비(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등)의 상태 점검
3. 수용인원 대비 피난 경로 확보 상태 점검
4. 객석 구역 내 위험요인 및 관객 출입 제한 구역 점검
5. 응급실, 응급조치인력 및 응급차량 등의 배치 계획 점검

6. 기타 안전 취약 및 위험요인 점검

- ② 대관 사용자는 공연 전 안전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파악된 경우,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공연 전까지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관객 안전 관리**

- ① 대관 사용자는 재해대처계획에 수립한 관객의 수용인원 및 군중관리계획을 준수하고 관객 입장부터 퇴장까지 관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② 대관 사용자는 관객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비상 상황 대응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록 D] 공연법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1] 재해대처계획 작성 항목(「공연법」 제11조, 「공연법 시행령」 제9조)

- 공연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공연법」 제11조의2), 안전관리조직(「공연법」 제11조의3), 안전교육(「공연법」 제11조의4),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공연법」 제11조의5)
-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 계획 및 공연계획서(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경우)

[2] 안전관리조직 구성(「공연법」 제11조의3,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

- 공연장에서의 안전관리조직 구성
 - ▶ 객석 수 500석 이상 ~ 1,000석 미만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 객석 수 1,000석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공연장 외 공연에서의 안전관리조직 구성
 - ▶ 예상관객 수 1,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 예상관객 수 3,000명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부록 E] 안전거리 설정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례

[1] 무대와 객석 1열 사이의 안전거리

- A사 : 2미터 이상
- B사 : 화약 사용 시 불꽃 높이가 6~8미터인 경우 안전거리 5미터
화약 사용 시 불꽃 높이가 4~6미터인 경우 안전거리 3미터

[2]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 A사 : 관객 1만명 기준 안전관리요원 150명 배치
 - B사 : 관객 1만명 기준 안전관리요원 200명 배치
- ※ 공연의 특성과 시설 및 장소의 운영 및 환경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

[부록 3] 공연자 안전교육 안내

※ 전체 내용 다운로드 경로

www.stagesafety.or.kr ⇨ 안전자료 아카이브 ⇨ 도서자료 ⇨ 기타 ⇨ 공연자 안전 현장 교육 안내서

1. 공연자 안전교육 제도 이해

공연법 제11조의4 안전교육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2조 공연자의 정의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 안전교육 시기와 시간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자 : 공연 전 1시간 이상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 안전교육의 내용

- 가.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나.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다.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 라.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마.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바.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연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라. 법제 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200만원

2. 공연자 안전교육 적용

공연법에 따른 공연의 정의 (공연법 제2조)

“공연”이란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공연의 정의에 따른 공연자 안전교육 여부

	공연 상황	안전교육 실시 여부
예시 1	등록된 공연장을 대관하여 유치원 장기자랑을 개최하고 아이들이 출연하고 부모님이 관람하는 경우	○
예시 2	등록된 대학교 공연장에서 비공개로 교수님과 학생들끼리 학과 발표회를 하는 경우	×
예시 3	등록된 공연장을 대관하여 회사의 총회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
예시 4	등록된 공연장을 대관하여 회사의 총회 행사를 진행하는 데 중간에 10분 정도 축하 공연이 있는 경우	○ (공연자에 한함)

장소에 따른 공연자 안전교육 여부

	장소 및 관람객 수에 따른 분류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록된 공연장에서의 공연일 경우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일 때 (재해대처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연일 경우)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일 때 (재해대처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연이 아닐 경우)	×

공연자 안전교육 대상자

공연법 제2조에 따라 공연자는 공연을 주재(主宰) 하거나 직접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공연을 주재하는 자는 공연제작에 관계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역할에 따른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출연자(연기자, 가수, 연주자 등), 스태프(무대감독, 전환수, 무대의상팀 등) 작업자(세트설치 및 철거자, 세트제작자 등)	○
	관객관리자 (하우스매니저)	×
	공연장에 근무하는 기계, 조명, 음향 감독님	×
	나이가 많이 어린 어린이 및 고령의 출연자	○
	티켓 판매 및 검표원	×
	외국인 공연자 (출연자, 스태프, 작업자)	○

3. 공연자 안전교육 방법



◎ 방법 1.

공연장 운영자가 현장에서 공연자에게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안전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부록 예시 1 참조)

◎ 방법 2.

온라인(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공연자 안전교육(출연자편, 스태프 및 작업자편) 수강하여 이수하도록 하고(55분) 현장에서 5분 이상 안전교육 시행(부록 예시 2 참조)

※ 공연자 안전교육의 주체는 공연장 운영자이며,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온라인 안전교육은 보조적인 수단임 (공연장운영자의 5분 교육이 없으면 무효)

◎ 방법 3.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연자 안전교육 동영상 상영하거나 제공하여 공연자에게 시청하게 하고(55분), 현장에서 5분 이상 안전교육 시행

- 동영상 위치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 안전자료 아카이브 → 안전교육 영상자료
- 출연자편 : 게시물 6번 ~ 9번 (영어 자막 포함) → 외국인 공연자에게 제공 가능
- 스태프 및 작업자편 : 게시물 1번 ~ 5번

4. 온라인 공연자 안전교육



◎ 온라인 공연자 안전교육 수강 방법

①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홈페이지 접속

- safety.kbrainc.com 접속
- 포털사이트(네이버, 구글 등)에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검색 후 접속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메인홈페이지에서 안전교육 → 온라인 안전교육 선택 후 접속

② 회원가입

③ 로그인 후 공연자과정 중 공연자에게 맞는 교육 선택 후 수강

※ 출연자와 스태프 및 작업자의 역할을 복수로 담당하는 공연자는 비중이 높은 역할을 선택하여 수강 가능

- | | |
|-----------------|---------------------|
| • 출연자편 | • 출연자편 (수어 포함) |
| • 출연자편 (어린이 과정) | • 스태프 및 작업자편 (수어포함) |
| • 스태프 및 작업자편 | |

④ 수강(55분) 후 테스트에 통과하면 이수완료

⑤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 가능

5. 온라인 교육 시 현장 교육



○ 온라인 공연자 안전교육 55분은 일반적인 공연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머지 5분 이상 해당 공연장의 특성에 대한 현장 교육 진행 (부록 예시 2 참조)



6. 공연자 안전교육 방법 선택의 예



가. 현장 교육 1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 ① 공연장운영자가 현장에서 직접 교육
- ②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동영상 활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교육

나. 현장 교육과 현장 외 교육을 같이 실시하는 경우

- ③ 온라인 교육(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을 수강하고(55분, 수료증 확인) 현장 교육을 5분 이상 실시
- ④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동영상을 공연단체나 기획사에 전달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후 이를 확인하고(교육 명단, 교육실시 확인증, 교육 실시 사진 등 증명할 수 있는 것) 현장 교육을 5분 이상 실시

공연자		안전교육 방법
예시 1	어린이 출연자에 대한 교육	①, ②, ③, ④
예시 2	온라인 기기 사용이 힘들거나 어려운 자에 대한 교육	①, ②, ④
예시 3	온라인 교육 회원가입이 안되는 어린이에 대한 교육	①, ②, ③, ④ ③의 경우 부모의 이름으로 회원가입하여 수료한 후 수료증을 출력하고 부모가 어린이에게 직접 교육했다는 확인증을 추가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음
예시 4	외국인 출연자	①, ②, ④ ②, ④는 영문 자막 제공

[부록 4]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1. 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제6조의2 관련)

1. 피난안내도의 비치

가.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공연장(법 제11조의5제2항 및 영 제9조의5에 따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피난안내도의 위치: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 · 피난통로 · 비상구 · 완강기 · 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 2)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3) 소방시설(소화기 · 소화전 ·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심장박동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 4)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 5) 비상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라.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등

- 1) 크기: B4(257mm×364mm)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공연장의 면적 또는 공연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mm×420mm) 이상의 크기로 해야 한다.
- 2) 재질: 종이(코팅처리 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마. 피난안내도의 설치 방법

관람객이 피난안내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보이는 공연장의 형태 및 방향이 피난안내도상에 표시된 형태 및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바.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2. 피난의 안내

가. 피난안내 대상: 공연장

나. 피난안내의 방법 및 시기

- 1) 방법: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 2) 시기: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안내해야 한다.

다.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 · 피난통로 · 비상구 등의 위치
- 2)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3)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 4) 장애인 · 노인 · 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 5)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라. 피난안내 방송 및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방송해야 한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